2019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양육,
국가책임인가
VS
부모책임인가

2019년 5월 10일(금) 13:00~17:30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회관 101호

주최 _ 한국아동권리학회

후원 _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아동권리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에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는 '아동양육'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의 공적양육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나 아이를 얼마나 배려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러한 양육지원 이면에 부모의 양육책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면은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부모의 양육경감을 위해서는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동이 행복하게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아동권리관점에서 양육지원체계를 재조명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인식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구 은 미 배상

■■■ 춘계학술대회 일정 ■■■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3:00~13:30	등 록		
13:30~1:40	인사말	구은미 학회장 (동의대학교)	사회: 박지민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40~14:10	기조강연	국가와 아동-국가는 아동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14:10~14:40	주제 발표1	아동양육: 국가와 부모, 그리고 공동체의 파트너쉽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4:40~15:00	휴식 및 포스터 참관		
15:00~15:30	주제 발표2	한 공동육아협동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적 육아의 의미 전가일 전문연구원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5:30~16:00	주제 발표3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정부와 부모의 역할 김인경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16:00~16:10	휴식 및 포스터 참관		
16:10~17:00	종합 토론 (ㄱㄴㄷ순)	김진성 소장 (생각실천연구소) 유복림 센터장(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영인 교수(한라대학교)	사회 및 좌장 : 강현아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17:00~17:30	우수 포스터 논문 시상식 종합정리		

■■■ 목 차 ■■■

기조강연

국가와 아동 ····· 9
- 국가는 아동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
황 옥 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주제발표 사회 : 박 지 민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 아동양육: 국가와 부모, 그리고 공동체의 파트너쉽 ····· 29
   이 미 화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2. 한 공둥육아협동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적 육아의 의미 ····· 51
   전 가 일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3.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정부와 부모의 역할 ····· 85
   김 인 경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종합토론 좌장 : 강 현 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토론자

김 진 성 소장(생각실천연구소) ····· 95
유 복 림 센터장(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99
장 영 인 교수(한라대학교) ····· 103

포스터 논문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모 애착과 분노표현방식과의 ····· 109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의 매개효과
   권 미 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졸업)
   이 진 숙(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 111
   김 근 혜(한국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3.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 113
   : 아동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김 민 서(전북대학교대학원 생활과학과 석사)

이 진 숙(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4.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실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115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김 윤 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부교수)
이 희 연(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 부교수)

5. 교육생태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아수학교육 ····· 117
김 희 진(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플러스 연구원)
정 혜 영(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6.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 아동의 ····· 119
자기보호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 보 은(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정 선 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놀이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 ····· 120
서 보 순(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정 혜 영(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8. 저출산 현상에 관한 언론보도의 토픽 모델링 분석 ····· 121
손 유 진(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 보 순(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9. 보육교사로 살아내기에서 살아가기로 ····· 122
: 23년 경력의 한 보육교사의 이야기
안 혜 림(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BK21 플러스 연구원)
강 승 지(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BK21 플러스 연구원)
이 연 선(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10. 저출산 연구동향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 124
정 혜 영(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 연 선(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강 승 지(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이 수 증 ····· 125



국가와 아동

- 국가는 아동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국가와 아동
- 국가는 아동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1. 무엇을 논의하려고 하는가?

국가 양육 지원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국가의 개입,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부모 책임과 국가 개입을 논의하는 것은 꽤 복잡하다. 우선, 부모 책임 특히 부모책임과 책임있는 부모의 개념 간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책임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 Finch(1993)는 가족의 책임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의 집합이 아니고, 가족의 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협의되며 당사자의 성별, 민족성, 세대 및 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만을 보더라도 부모책임에도 다양한 요소가 뒤섞여 있다. 여기에 국가 개입의 수준을 부모책임과 대입하는 것은 다양한 이론적 개념, 이데올로기 및 사회의 가치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근래 가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가족의 개별화와 자율성, 그리고 사적 공간으로서의 가족을 중시하여 자녀 양육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던 과거에 비교할 때 훨씬 적극적이다. 전 계층에 대한 일부의 무상 지원 정책이 개인의 필요와 상관없이 공급되면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낳을 수 있고 책임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황옥경, 2015).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확대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서 정책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아동의 치명적인 위험과 손상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방학 중 급식 결손, 학대아동 등을 사회적으로 방치했으며 보육이용 아동의 지원 기준의 제한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보고 등은 양육지원에 국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반성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보편주의 서비스를 확대할 것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 아동정책의 선별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맞물려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아동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Hatch, 1995: 118-9, beyond childhood)고 믿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에 대한 국가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만일 우리가 이른 시기부터 아동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면 가난, 인종차별, 범죄, 약물남용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병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통계보고가 제시되었다. 이 보고물들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 보편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하였다. 정부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게 되면서'국가완전책임제'라는 정책 아젠다를 탄생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취약했던 아동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고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한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별다른 이의 없이 정부의 정책선회를 받아들였다.

수혜 대상의 무차별 확대 가능성이라는 보편주의의 특성은 정치적인 생명력을 부여한다. 수혜 대상자가 다수라는 보편주의의 정치적 생명력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가족개입이 빚을 수 있는 정책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허락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논쟁이 없었다. 정책은 정치와 분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정부의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 개입은 법률과 정책의 조정과 조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보편주의에 근거한 국가 개입의 무분별한 확대는 부모책임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과장된 국가 책임 운운은 정부가 애초에 기대한 바의 수준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보편주의가 개인의 요구를 세밀하게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대상자 국민은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요구하고 불만을 표할 것이다. 동전은 양면이 있듯이 보편주의로 인한 국가개입의 확대는 아동에 대한 성장기반의 안정성 확보의 이면에 가족의 의존성을 높이고 자율적 책임을 약화하여 책임있는 부모로서의 역량을 둔화시킬 수가 있다. 일부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 양육방임을 우려하기도 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책임과 책임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

며 부모 책임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서 국가는 가족에 대하여 어느만큼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오늘의 발제는 부모책임의 의미를 살펴보고 부모책임과 국가의 개입 수준의 관계를 아동권리 시각을 중심에 놓고 이론적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아동발달과 부모책임, 그리고 국가 개입에 대한 법과 개별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오늘 논외로 하고 추후과제로 남겨 놓는다.

2. 아동과 부모 : 아동은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인간의 개별성과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연관된 것으로 다소 복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으로 칭함)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두 가지 지위를 부여하였다. 보호의 대상자와 권리의 주체자가 그것이다. 여기서 보호의 대상자로서의 아동은 아동이 자신의 본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협약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모와 사회가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어떤 수준에서 보호해야 하는 지를 명시하였다. 협약(CRC)은 부모, 법적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non-governmental actors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도 책임이 있음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아동기는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Eekelaar는 아동이 양육지원을 받을 권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아동은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발달의 과정 중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야 할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아동에게 필요한 양육을 지원 할 의무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서 MacCormick은 이렇게 말한다.

>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는 아동과 생물학적으로 천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동의 보살핌과 양육의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Vallentyne는 부모의 책임을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보았다.*

>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지지 않고 부모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부모는 성인이 자녀와 관련해서 갖는 지위이며, 부모의 책임은 아동에 대한 신탁지위이다. 그렇다면, 누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부모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비혼부모, 동성부모 , 재결합 가족 등과 같이 가족의 유형이 다양할수록 복잡하다. 재결합 가족의 경우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어머니이며, 누구에게 양육권이 유지되어야 하는 가와 같은 복잡한 법적 규율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국가가 부모 책임을 나누어 가질 경우 그 규정이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영국은 재혼가족의 경우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의 삶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부모책임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은 각각의 양육상황에 대한 부모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중시한다. 생물학적인 부모는 이혼 후에도 부모책임을 가지며 재혼가족의 경우 새로 부모가 된 사람도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서구 사회가 이혼이후에도 생물학적인 부모나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이 모두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동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모로 이해하고 부모 책임을 상세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 책임에 대한 법 규정은 자녀 양육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조손가정에서 자녀를 자라게 하거나, 그리고 아동들이 혼자서 살도록 하는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부모 책임의 근거

1) '책임있는 부모'와 '부모 책임'

부모 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임있는 부모가 된다는 뜻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부모가 책임을 갖는다는 것 즉 부모책임은 법에 따라 자녀의 부모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 의무, 권한,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갖는 권리, 의무, 권력, 책임, 권한이 무엇인가? 부모의 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의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최근에 부모 권한보다는 부모책임이라는 말에 무게중심이 더 실리고 있다.

책임있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Hart, 1967 : 348). 책임있는 부모라는 것은 부모책임을 완전히 이행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Eekelaar, 2007 : 127). Eekelaar (2007)의 주장처럼 책임있는 부모라는 것은 '완전하게 책임지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삼가며, 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지어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 내의 부모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할 때, 부모 책임은 실제로 '존재의 한 방식, 즉 사고 방식(a way of being, a mode of thought)'까지도 포괄한다(Reece, 2003 : 210). 사고방식까지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부모 책임만으로는 책임있는 부모인지 아닌지를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법적 개념과 책임있는 부모가 되는 것의 관계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법이 규정하는 부모 책임과 책임있는 부모의 목록이 일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법적인 부모 책임은 단지 부모가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 부모 책임은 자녀의 건강, 교육, 종교, 아동양육, 아이들 소유물, 배우자 변경에 따른 자녀 양육책임의 문제 등과 연관된다. 자녀의 종교 문제 등과 연관하여 부모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영국 정부는 부모 책임을 완수할 역할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로서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출처; https://www.gov.uk/parental-rights-responsibilities). 아래의 사항 이외에도 부모는 법적 책임 소

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이에게 거주할 집을 제공
- 아동을 보호하고 부양
- 자녀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등의 훈육
- 자녀의 교육을 선택하고 제공
-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의
- 자녀의 이름 작명 및 개명에 대한 동의
- 아동의 재산과 소유물 관리

이외에도 영국정부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부모로서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여 설사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자녀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게 부모 책임이 부여 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조차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가 언제나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할 경우 등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부모 모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한쪽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Specific Issue Order 나 Prohibited Steps Order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동거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지,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국정부는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부모책임을 부여받는다. 아버지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갖는 경우는 아동의 엄마와 결혼한 남성,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기록된 남성이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부가 혼인상태이거나 자녀를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경우는 부부 모두 부모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이 경우, 이혼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이 유지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책임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있는 부모 역할이라는 것이 반드시 법 규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있는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를 낱낱이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부모가 되는 것은 그리고 어쩌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 이상을 이행하는 것이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 흥미로운 일이다.

2) 부모의 이익과 부모 책임간의 긴장과 충돌

부모책임을 말할 때, 부모권리가 부모의 의무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부모의 이익이 아동의 이익과 별개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지의 문제가 있다. 부모의 책임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부모 책임과 관련한 제기되는 갈등 중 하나는 부모 책임 규정이 아동의 이익보다 부모의 이익을 우선적하는 경우가 있을 때이다. 그러나 영국 상원은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아동을 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Gilmore (2006) 역시 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부모책임을 규정할 때 부모의 이익이 아니라 아동의 이익과 얼마나 많이 연관되어 있는 가를 고려해야 한다. Jonathan Herring은 자녀의 성과 관련하여 부모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할지 몰라도 아동의 복지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종교에 관한 사안이 부모에게는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부모 책임은 부모의 권리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녀의 결혼 동의에 관한 부모 책임은 자녀를 위하여 마련된 법규정이지만, 실제로 부모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사례들 때문에 부모책임 규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의사 결정에 한계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의사결정 재량권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역량 및 아동복지를 훼손할 때는 부모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영국사회에서 부모와 국가간의 대표적인 갈등은 부모 이익과 아동의 교육권 간에 발생하고 있다. 학기 중 여행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장기여행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둘러싼 정부의 아동에 대한 교육 기본권과 부모의 자녀 양육권 간의 갈등은 오래되었다. 다른 예는 2세아 보육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과 부모의 가정내 양육권

보장 요구간의 부모 책임에 대하여 양자간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 2세아 보육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견해차이의 원천은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부모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아동의 역량 발달과 복지를 훼손하지 않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있는 부모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책임은 아동 최선의 이익 즉 아동의 복지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부모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부모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Reece는 법정에서 부모책임을 재해석하여 부모책임을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이름 붙이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그는 부모책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렇더라도 부모 책임에 대한 분쟁이 법원에 제기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아동의 복지이다.

3) 부모 책임의 법 규정과 취약성

우리나라의 법은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보호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의미를 법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가? 헌법에서 아동의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양육의 원칙적인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는가? 아동이 각종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들 문제를 비단 아동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헌법을 비롯한 법적 차원의 관심과 양육의 책임에 대한 명료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가치로 두고, 그 누구도 권리 행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김선택, 2997). 헌법의 아동명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아동 역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행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거나 단순한 대상이 될 수 없다(김선택, 2008; 황옥경, 2017).

민법에서는 법적 행위를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연령기준에 따라서 대체로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5조 1항은 보호자의 책무 조항을 통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 책임을 적시하였다다. 제 5조 1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에 신설된 제 5조 2항과 3항 각각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강조하여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이 조항은 협약이 제 5조에서 국가가 부모와 확대가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적합한 지도를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할 것을 적시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언급이다.

협약 제 5조는 아동의 역량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 또는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9). 협약은 5조는 부모뿐만 아니라 확대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법적 책임자를 아동에 대한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다하는 주체로서 적시하였다.

협약 제 5조항은 아동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 부모, 가족과 국가 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아동복지법은 부모와 국가 책임의 관계보다는 아동복지법 제 제 4조에서 국가의 아동의 보호자 및 가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자녀 양육을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벗어난 부모의 양육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924조). 법원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의 복지가 친권행사의 기준이 되며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자녀의 생명 신체의 유지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친권의 행사는 존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선자, 2018). 부모의 양육행위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그 부모는 잘못된 양육행위에 대하여'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유아에 대한 부모의 과실이 판정에 참작이 된 판례

가 여럿 있다.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도 의무가 있는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한동안 우리는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는 말을 버젓이 사용했다. 아동이 독립된 한 주체로서 어떠한 것에 책임을 지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외부로부터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간과하고 부모책임을 소홀하게 생각했다.

부모책임의 규정과 판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의 부모 책임은 영국과 달리 부모의 역할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는다. 친권자의 부모 책임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구조에서의 부모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의 아동 양육 책임에 대한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부모로 부터 양육받을 아동의 기본권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 대안양육 체계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 책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황옥경외, 2015).

4. 부모 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

1)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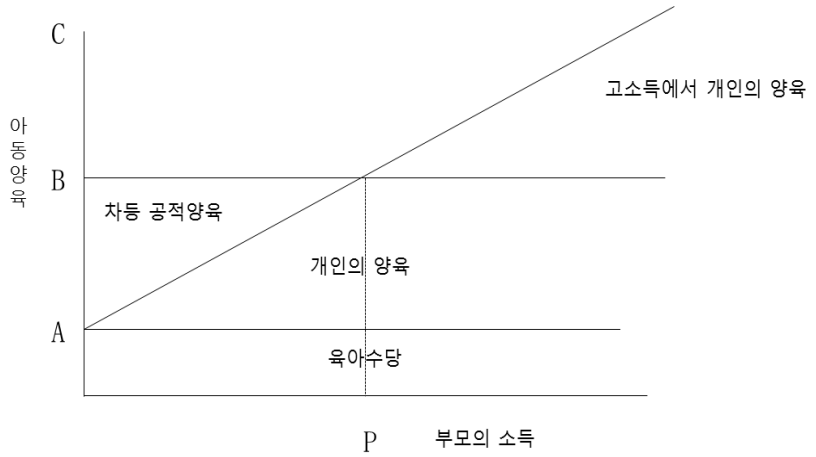
협약은 부모, 법적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도 아동야육의 책임이 있음을 아울러 명시한다. 협약 8조는ㄴ 부모 및 법적 보호자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적시하였다.

아동복지법은 부모 책임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부모 양육지원을 명문화하였다. 아동복지법의 제 4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부모 책임과 국가지원 내용은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가정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 정책, 영유아 보육과 교육정책, 빈곤가

정의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그리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정책을 통하여 부모책임을 지원하면서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을 늘려왔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개정은 가정내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 수준을 확대하였다.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취약계층 부모를 지원하는「한부모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제정하였다. 최근 많은 입법과 정책 변화는 가족의 위기와 필요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발달, 부모, 국가 개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Y 축은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이고 A는 보편적인 양육수당 등의 국가개입으로 인한 지원이다. 이 그림은 부모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갖지만 국가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아동양육의 이론적 모델 >

국가 개입의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부모의 책무를 지원하는 국가의 개입을 늘렸지만, 정작 그것이 아동의 존엄과 개성이 존중되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률적, 정책적 변화 움직임이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보육과 유아교육위 경우 국가 개입이 확대되자 부모의 역할이 위축되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무력감을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가족해체를 빠르게 돕는다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로 보편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가족개입의 확대는 가족

의 역기능을 보충하려는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족의 역기능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러 기관으로 산재된 방과후 돌봄은 가족과 아동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런 시각을 방증해 준다. 보육과 유아교육 전계층 이용료 지원이 부모의 양육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재연 외, 2015)도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수월성을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보육교육기관이나 어느 방과후 돌봄 기관도 아동의 최대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 이용조건이 거의 없다는 게 이런 우려가 상상이 아닌 것임을 보여준다. 일반가정 뿐만 아니라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미혼한부모, 다문화가정 등의 위기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과 개입의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개입의 질과 방식, 그리고 이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 아동 성장과 발달, 부모책임, 그리고 국가 개입의 관계

부모의 책임이란 "법에 따라 아동의 부모가 자녀와 그의 재산과 관련하여 갖는 모든 권리, 의무, 권한, 및 책임 "인데 그런데 이 개념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부모책임은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최선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범주 내에서 규정된다. 부모의 양육권은 그 자체 부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동의 이익에 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 거렇기 때문에 아동양육에 있어서 부모책임은 언제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국가 개입은 역시 부모책임과 책임있는 부모 역할을 돕기 위한 것으로 역시 최상의 아동발달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부모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모 양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 부모에게 양육의 능력이 사실상 없거나 양육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아동과 부모 그리고 국가 사이의 3각 관계의 문제가 대두된다(김선택, 1997).

이 삼자는 가정의 형편과 사정, 아동의 연령, 그리고 부모책임과 국가 개입의 책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하는 가에 따라서 상호 관계가 규정된다. 아동은 단순한 양육대

상에 지나지 않고 스스로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부모 책임은 아동의 역량과 아동의 복지를 고려하는 범주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국가는 적정한 수준에서 아동의 발달과 부모책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기본권과 부모의 양육권 사이의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다. 앞서서 논의한 영국에서의 방학중 여행과 관련한 부모고 국가간의 교육권과 양육권 논란, 그리고 2세아 보육기관 이용의 전면 지원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과 국가 개입의 논란은 이 삼자간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개입 수준이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임을 보여준다. 각종의 아동 수당이 발전한 복지 선진국에서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 부모의 실제 양육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 때문에 아동이 부모 양육권 다툼의 경제적 볼모가 되는 경우를 보는 게 어렵지 않다. 이 역시 아동양육 비용과 부모 책임, 그리고 지원이라는 국가 개입을 어떤 수준에서 제공해야 하는 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례이다.

5. 국가는 아동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 보편주의 유혹 이면의 국가 개입의 정치성, 그리고 필수성

한때 부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의 온전한 책임을 홀로 지고 자녀 양육의 모든 부문을 감당해야 했다. 이웃의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부모가 위기에 직면하면 자녀는 부모 위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자신이 처한 환경적 불편과 위해를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래 조기개입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위기가족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게 가능해 졌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역할에 대한 국가개입과 지원이 늘면서 부모책임이 약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개입의 예상치 않은 결과이다.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듯이 부모이어야 한다. 국가지원이 늘면서 우리사회에서 부모 됨의 가치와 책임이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 많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는 여러 요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부모역할이 주는 부담도 이유 중 하나이다.

국가는 가족과 부모 지원의 가장 중요한 촉진자이며 제공자이므로 부모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개입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가족간의 관계 자체가 약화되고 있으며 사교육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가족의 역할이 잠식 당하는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국가개입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국가개입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그러나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부모 책임의 한계를 모호하게 하고 특히 책임있는 부모 역할을 방해하는 현상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임있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부모의 책임을 가족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가 배제되는 보편주의 정책은 정책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수요자 만족과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보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개인의 욕구와 필요와 불일치할 수 있다. 최소수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최선의 만족과 양질의 우수한 만족을 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편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가족 개입은 가족의 선택을 제한한다. 개인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중시하고 각자의 요구가 달라 창의적 사고와 분별력(sense)과 감수성(sensibility)를 갖추어야 하는 오늘날의 개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만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김선택(1997), 황옥경등 (2015)은 아동복지법 제 4조의 취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부모가 자기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지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보편주의에 근거한 국가개입시 인간 자율성과 선택의지의 훼손, 그리고 책임감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주의에 기반한 정책의 수요자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은 보편주의가 빚을 수 있는 한계 때문이다. 보육정책에서 일주일동안 종일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줌으로써 부모의 양육방임 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영유아의 개별성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보편주의에 기반한 국가개입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수요자의 책임감 둔화는 계속해서 다른 정책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이전에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과 양육어려움의 주된 요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요자 부모는 질적 우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또 다른 요구를 이어간다.

정부는 몇 가지 보편주의의 보정장치를 마련하였다. 맞춤형 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젠 일일보육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정책의 획

일화를 벗어나 개인이 선택할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급지급액의 차이는 보편주의 적용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게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아동은 여전히 가정보다는 기관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다. 실제 취업부부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부모가 비용지원의 유혹에 밀려서 부모 양육책임을 방기하고 영유아 조차 깨어 있는 시간의 기관이용 시간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은 어쩌면 참 끔직하다. 부모와 너무 빨리 떨어져 지내는 영아를 보면서 안타까움만 크다. 보편주의와 개인의 선별적 요구를 충족하려면 기관이용 유무나 종일이용 규정 혹은 매일 맞춤보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보육을 이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역기능이 발생할 경우 가족 역량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한 국가의 보충적 역할을 훌쩍 넘어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가족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로까지 이어진다. 전계층 보육교육비의 지원, 조건이 무색한 어린이집 입소조건, 무상급식, 무상교육, 각종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 각종의 무상정책과 서비스가 쏟아진다. 한편에서는 과도한 국가개입의 팽창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우리의 아동 복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기반을 국가가 더 늘려야 한다고 지지한다

보충성은 양면성을 가진다. 적극적인 측면은 국가나 지방정부 등의 공동체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부과한다. 지나친 개인주의로 공동체 해체를 막기 위해서 집권적 성향을 가진다. 보충성의 원칙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나 가족 사회 단체 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국가 등 공동체의 개입을 금지한다. 개인이 해결할 수 잇는 문제에 국가가 나서면 불필요한 개입이 된다.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에 국가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중앙일보, 2019.5.21일자 이기우의 퍼스팩티브)

조기개입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자는 책임있는 부모로서의 양육역량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자녀를 이용기관의 누군가가 전적으로 도와야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의존성을 높인다. 각 종의 방과후 돌봄교실 역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까지 빼앗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국가개입 확대가 책임있는 부모로서의 자기 책임의 노력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부모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오늘의 논고에서도 확인할 수있듯이 부모 책임에 대한 법규정을 살펴보고 무엇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하며 이를 명문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킬 수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개입의 방식과 수준 그리고 내용에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출생 시의 차별 상황을 보편주의 정책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복지국가들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한다.

아동양육지원을 확대하는 정부는 언제나 선하고 유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이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지원하고 훼손할 수 있을 지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 흥미롭게도 최근 스웨덴은 결과를 생산해 내려는 국가개입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국가 개입의 역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은 갈등과 변화를 거치며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한다.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와 부모의 책임의 관계와 균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최근 보편주의 정책의 확대로 인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책임 논란은 국가 책임의 범주와 연계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피터슨 교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책임과 의미의 관계에 대한 토론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인류는 지난 반세기동안 권리와 자유의 구가와 충동적인 즐거움을 추구해 왔는데, 이건 얄팍한 것이고 폭풍일이 일면 난파하기 쉽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저에 흐르는 기본 개념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가 많고 실제 산다는 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다. 용기, 위엄, 그리고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이는 오래된 낡은 가치라고 볼 수 있고 실제 그렇지만 이것이 삶의 요동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다.

참고문헌

김선택(1997) 아동청소년의 헌법적 기초, -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http://search.ccourt.go.kr/ths/bk/ths_bk0204_Print.do?cid=05030802&seq=7634&cname=%ED%97%8C%EB%.

중앙일보(2019,5.21). 과도한 국가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이기우의 퍼스팩티브

황옥경, 안동현, 이호균, 강현아, 홍관표, 현소혜, 정선영 (2014).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 조사.국가인권위원회.

황옥경(2015). 아동복지, 그리고 다음세대. 이재연, 황옥경, 안동현, 김영지, 김효진, 이호균, 강현아, 장영인, 장선영(2015), 아동복지현장에서의 아동권리 레토릭. 교육과학사.

황옥경(2015). 육아지원기관과 영유아 권리, 이재연, 안동현, 황옥경, 구은미, 한유미, 이완정, 한지숙, 김경륜, 아동권리 0-8 – 육아지원기관에서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교육과학사.

황옥경(2017). 아동권리의 헌법 명시,아동과 권리, 21,4,479,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2019). 양육지원 정책 : 수사(Rhetoric)의 의미와 정책적 접근의 변화 필요성

Dehlberg, G., Moss, P., & Pence, A.(2013).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outledge.

Probert, R., Gilmore, S., & Herring, J.(2009). Responsible Parnets and Parental Responsibility. Hart Publishing

Wikeley, N(2006). Child Support, Law and Policy, Hart Publishing.



아동양육:
국가와 부모, 그리고
공동체의 파트너쉽

이 미 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아동양육: 국가와 부모, 그리고 공동체의 파트너쉽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 본고는 아동양육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했던 관련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한편 주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공유하고자 함

□ 먼저 아동양육의 범주 및 용어의 혼재 고려해야 함

- ㅇ 아동양육, 육아, 보육 등 가정에서의 양육과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보육과 교육, 돌봄 등을 혼용
- ㅇ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육아정책, 육아지원정책, 양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돌봄정책 등으로 표현
- ㅇ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위주의 협의의 육아정책에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저출산 대응정책 등의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의 범주를 확장하는 추세
- ㅇ 정책 대상과 목표에 따라 용어 혼재: 영아, 유아, 아동, 어린이 등/ 유아교육, 보육, 돌봄/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사회 공동체/ 교육과 복지 등

□ 활발한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제 관련 선행연구를 제시하고자 함

- ㅇ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분석
  -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2017~2018) 및 가정내 양육 지원 요구 및 개선 방안 연구
  - 육아정책 동향 및 패러다임 전환 연구
- ㅇ 국가책임과 부모책임에 대한 연구
- ㅇ 지역사회 공동체 양육과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일본사례 중심의 지역사회 공동체 연구
  - 지역사회 돌봄 및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연구

2.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분석

가.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결과 분석(2017~2018)

□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을 설계할 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김동훈 외, 2017)는 다음과 같음.

- ㅇ 영유아 자녀 영육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았음.
- ㅇ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다만 비교적 낮은 연령대에서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나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ㅇ 따라서 향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요구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음.

<표 1>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기타	수
전체	7.6	76.1	14.6	1.5	0.2	(3,000)
성별 구분						
남자	9.9	73.7	14.5	1.9	0.1	(1,522)
여자	5.3	78.6	14.7	1.1	0.3	(1,478)
X^2(df)			na			
연령						
15~19세	8.2	63.3	25.5	3.1	-	(98)
20대	5.3	72.8	19.0	2.3	0.5	(599)
30대	8.2	69.2	20.7	1.7	0.2	(526)
40대	5.0	76.9	16.1	1.9	0.2	(623)
50대	10.4	80.6	8.0	0.8	0.2	(661)
60대 이상	9.3	82.8	7.5	0.4	-	(493)
X^2(df)			na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김동훈 외(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I . P.112

ㅇ 국가 육아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우선순위 조사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원'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31.2%로 많았음.

ㅇ 성별로는 남자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원' 여자(36.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남자(27.7%)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음.

<표 2> 국가차원의 육아정책 설계에서의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수
전체	31.2	23.2	39.7	5.8	0.1	(3,000)
성별 구분						
남자	27.7	24.0	42.4	5.7	0.1	(1,522)
여자	34.8	22.3	36.8	5.9	0.1	(1,478)

자료: 김동훈 외(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Ⅰ. P.113

□ 국가 차원의 육아정책 설계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을 연속으로 조사한 결과(최은영 외, 2018), 2018년에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2%로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고 아이의 행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4%로 가장 낮았음.

<표 3>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의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수
전체	26.5	34.2	27.4	11.4	0.5	100.0(3,000)
성별 구분						
남자	22.5	35.9	30.2	10.9	0.5	100.0(1,522)
여자	30.6	32.4	24.6	12.0	0.5	100.0(1,478)
X^2(df)			30.38(4)*			

자료: 최은영 외(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Ⅱ. P.150

ㅇ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2017년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이 1순위였으나 2018년에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1순위로 바뀌었음

ㅇ 미시적인 육아정책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육아가 행복한 사회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함

나. 가정내 양육지원 요구와 개선 방향

□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이용과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권미경 외(2016)는 영유아 어머니 130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는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가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가 16.4%로 많았음.

ㅇ 1,2,3 순위 전체 응답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가 6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가 53.3%로 많았음. 이는 긴급 보육과 잠깐의 휴식 제공에의 요구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교육·보육 기관에의 요구가 높음을 보여줌.

<표 4>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43.7	12.7	10.8	66.6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	16.4	21.0	12.6	49.1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11.0	19.8	24.0	53.3
교육·보육 비용이 부담된다	10.3	15.5	11.5	36.4
기저귀, 분유 등 양육비용이 부담된다	5.5	6.0	8.6	19.6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4.4	10.6	10.1	24.5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4.1	4.7	7.2	15.5
수면시간 부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3.7	9.2	12.5	24.6
기타	0.3	0.2	1.1	1.6
없음	0.5	0.2	1.6	2.3
계	100.0(1,302)	100.0(1281)	100.0(1238)	(1,302)

자료: 권미경 외(2016). 가정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145

ㅇ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순위 응답 결과는 '직접 양육 수당 지원(가정 양육부담 경감)'이 37.5%로 가장 많았음

ㅇ 1,2,3 순위 전체 응답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직접 양육 수당 지원(가정 양육부담 경감)'이 6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간제 보육, 아동 돌보미 이용편리성 개선'이 42.3%로 많았음.

<표 5> 양육지원 정책 개선 방안

단위: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적정 양육수당 지원(가정양육부담 경감)	37.5	17.5	9.0	63.9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 추진	15.7	6.3	6.9	28.9
영아는 가정 내 양육, 유아는 기관이용	14.6	11.8	8.3	34.7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	10.8	17.2	14.3	42.3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8.4	14.1	13.5	36.0
지역사회 이용가능 시설 확충(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2	9.8	13.4	26.4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스톱 안내	2.6	6.7	10.1	19.5
출산/양육지원/상담 온라인 종합포털서비스 체계화	2.2	5.3	4.8	12.3
양육정보 맞춤형 제공 서비스(면대면/전화/문자 등)	1.8	4.3	6.2	11.5
부모교육 기회 확대	1.6	4.3	6.1	12.0
지원제도와 연계한 부모교육 의무화	1.2	2.2	5.3	8.7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조성	0.3	1.4	2.1	3.8
계	1,302			

자료: 권미경 외(2016). 가정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245

ㅇ 양육의 주체는 부모이므로 국가가 돕는 역할을 해야 하며 '양육함'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업이므로 양육의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함께 키우는 사회를 지향하며 생태체계적 접근을 하기 위해 가정, 지역사회, 국가까지 '더불어 함께 키워간다'는 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양육지원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다. 아동양육 지원 정책 동향

□ 2014년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미화 외(2014) 연구에서는 향후 보육정책의 목표로 '아동발달'과 '부모의 취업'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필수 지원 시간과 선택 지원 시간으로 보육비 지원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어린이집 유형을 국공립 및 공공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컨설

팅 개념이 포함된 평가인증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또한 보육정책은 '육아정책'으로 종합 진단하여야 하며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이정원 외(2017)는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에서, 보육정책의 철학적 관점과 실제 시행 후의 발생 현안에 따라 어떤 정책이 적정한가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음

ㅇ 보편적 무상보육과 선별적 보육 지원과 같은 보육비용 지원 대상에 대한 의견 개진 시 선별적 보육 지원 시기에는 보편적 무상보육으로의 확대를, 보편적 무상보육 시기에는 선별적 보육 지원으로의 축소 조정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음.

□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정책 목표의 중요도에 대해 관련 전공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유해미 외, 2015).

ㅇ 가족의 육아역량 강화 즉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중요도는 '돌봄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4.2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 강화'는 '자녀 양육의 권리와 책임 공유'와 동일한 수준인 4.24점(5점 만점)로 조사되었음.

<표 6> 육아지원 분야 정책 목표의 중요도(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아동/보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여성/노동
가족의 자녀돌봄 부담 경감	3.91	3.69	3.77	4.17	4.31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4.24	4.06	4.15	4.42	4.62
자녀돌봄 지원의 다각화	4.16	4.17	4.27	4.04	4.15
가족의 육아 역량 강화: 부모의 양육 책임과 권리 공유	4.24	4.43	4.38	3.83	4.23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 강화	3.94	3.91	4.04	3.79	4.08
돌봄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확대	4.26	4.31	4.42	3.96	4.31
(수)	(98)	(35)	(26)	(24)	(13)

주: 육아지원 분야 정책 과제 성과 달성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 '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P.145

ㅇ 영아 대상 양육지원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며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자녀 돌봄의 사회화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강화로 변화하였으며 시설 보육 서비스 지원 위주에서 가정 내 양육과 부모 역량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과 부모 상담 서비스가 새롭게 강조되었음을 제시하였음.

라.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

□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육아정책의 수요자이며 대상자인 아동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육아정책의 의미, 육아정책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정원 외(2018)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관점에서의 육아정책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제안함.

ㅇ 육아정책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여 아동발달 지원, 부모역할 지원,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대응 등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ㅇ 육아정책에 있어서는 방법적 측면에서의 전환이 필요함

- 여성 중심의 육아 역할 지원 → 양성 평등한 육아 역할 지원
- 부모 또는 성인의 이익 우선 고려 → 아동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 출산 대책으로서의 도구적 육아정책 → 육아 자체의 행복을 위한 육아정책
- 정부와 가족 중심 → 정부, 가족, 사회가 공동으로 육아 주체가 됨
  - 향후 정부, 가족 외에 사회가 공동으로 육아정책을 통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육아정책이 개발 도입되어도 자신의 자녀 외에 관심이 없고 책임감 없는 사회라면 어떤 아동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에서 아동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웃과 직장,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 유아교육과 보육 중심 → 국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
- 학문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만을 기반 → 학문간 융합과 연계를 통해 육아정책 영역 확대
- 영유아에 한정된 육아정책 대상 → 실제 육아의 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대상 범위 확대
- 저소측층 위주의 선별적 육아정책 → 보편적 육아정책 지속 발전
- 제도 개발 중심의 육아정책 →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화적 접근을 접목한 육아정책

ㅇ 이 중 가장 전문가의 동의가 높았던 방향은, 육아의 양성 평등 지향, 아동중심의 육아정책 지향, 일과 생활이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 강화임

3. 국가책임 대 부모책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가책임이냐 부모책임이냐로 이분화하긴 어려우며 그 비중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하진 외(2015)는 아동발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아동들에게 부여된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음.

ㅇ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의 의무는 아동의 발달을 위해 부모공동의 양육 역할을 지원해야 하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보호가 필요할 때 육아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음.

ㅇ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보장은 물론, 보육시설 접근을 보장하고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부담없이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과 발달을 지원해야 하다고 하였음.

□ 자녀양육의 가장 기본은 가정양육이라는 전제하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 심미경(2012)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지원정책이 여성의 노동력활동, 출산율 제고, 아이의 기본적 의식주 제공을 넘어서서 미래구성원의 건강한 삶, 사회의 유능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포함해야 하고, 생태학적 관점을 감안하여 지원의 대상을 부모, 자녀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중간체계의 관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음.

ㅇ 정부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국가에 의존하고 가정에서의 양육보다 기관에서의 양육을 더 선호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왔다고 피력함.

ㅇ 영유아기는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고 부모와 자녀는 상호의존적이며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애착형성, 삶의 만족도,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강한 부모-자녀의 관계 형성의 출발점인 가정양육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장영은(2012)은 자녀양육의 파트너로서 보육의 역할을 살펴보고 부모의 보육 선택에 있어 어떻게 부모가 보육을 선택했는가를 고찰해 보았음.

ㅇ 시설보육은 부모 양육을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의 의해 선택되고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고 다시 부모의 양육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녀 양육의 중요한 파트너이라고 주장하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양육형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음.

- ㅇ 또한 영유아의 발달을 최상으로 지원하고 자녀양육의 파트너로서의 보육의 상을 재정립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음. 이를 통해 보육을 충분히 잘 선택 했다는 부모의 자신감이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건강한 발달 그리고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모두에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하였음.

□ 문선화(2011)는 아동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보육의 국가책임이라는 보편성에 근거하여 보육관련 서비스에 제공되는 수당에 대한 재고와 재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첨가와 그 역할 정비에 대해 논하였음.

- ㅇ 저출산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아동복지에 근거하여 왜 보편적 관점에서의 아동양육 수당제도의 운영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을 논의되었으며,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의 득과 실 그리고 한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음.

□ 정효정(2013)은 보육은 국가 책임으로 가는 방향이 맞으며 고예산과 정책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책임 보육이 성공하려면 내실화있게 국가 책임 보육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아동양육과 관련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는 다양하며, 국가 개입에 대하여 자유선택을 수용하는 입장과 자유선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자유,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측면에서 논의하였음(이수경 외, 2013).

- ㅇ 자유선택을 수용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나 확대보다는 가정양육수당, 가정 내 개별적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이 도입됨으로써 부모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봄
- ㅇ 공공어린이집을 통해서 보편적 공보육정책을 중요시하면서 자유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 아님을 역설한다고 하였음.
- ㅇ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육서비스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성립되어야 함을 시사하였음.

- ㅇ 특히 양육수당과 같이 시설 이용과 교환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양육 도우미나 방문 보육교사 파견 정책 등으로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한 부모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였음.

□ 송다영(2014)은 복지국가 발전 차원에서 보육의 가족 책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힘. 2000년대 이후 보육이나 장기요양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둠.

- ㅇ 욕구와 정책도입의 간극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시장 원리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국가가 돌봄의 문제를 철저히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책임과 잔여주의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 ㅇ 2000년대 중반 보육과 노인요양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책임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소 개입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함. 시장화와 가족책임주의가 강력히 결합된 현재의 상황을 돌봄의 사회화정책 발달의 지체로 보고, 복지국가의 2차 지연으로 파악했음.

□ 한국인의 보육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김영미(2016)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태도는 국가책임성, 정책선호(현행 무상보육, 소득계층별 차등보육, 취업부모 우대) 2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자기이해(self-interest)와 주관적 신념, 가치를 반영하는 요인들이 보육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

- ㅇ 분석결과, 각 태도 차원에 따라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지만, 자기이해와 관련된 성별, 세대, 학력, 고용지위, 거주 지역, 영유아 자녀 유무 요인이 각 차원별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음. 주관적 인식, 가치 요인인 평등의식은 강한 국가책임 지지성향, 무상보육 반대, 차등보육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

□ 황옥경(2019)은 양육지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기관이용에 집중된 '비용의 지원'이었으며 국가 책임과 부모 책임의 조화와 균형, 역할분담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토론의 과정이 없었던 것을 크게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음.

- ㅇ 이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자칫 선택권제한과 국가 주도로 인한 획일화된 양육형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성을 지향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는 아이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음.
- ㅇ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부모 역할의 공백을 채워주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양육지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 내 양육역량을 강화하며 아동이 특히 맞벌이 부모 및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4. 지역사회 공동체와 아동친화적 환경 관련 연구 분석

가. 일본 사례 중심의 지역사회 공동체 선행연구

□ 이성한(2018)은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 강화 흐름에 대하여 일본과 비교하였는데 분야별 중점과제를 비교한 결과, 결혼하기 좋은 환경조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일·가정양립의 일상화의 4가지 방향에 관한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 최미미(2017)는 일본에서 지역사회 돌봄 역할의 강화 추세를 제시하면서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봄

- ㅇ 일본은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고 설명함
- ㅇ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김민정(2012)은 나고야시 지역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육지원 사례를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지원활동에 있어서의 네트워크를 고찰한 결과, 나고야시의 자녀양육지원의 계획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젊은이의 자립을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만들기가 특징임.

- ㅇ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만들 때 설계단계부터 주민이 참가해서 행정과 함께 어린이 시설을 만드는 경험하게 되는데 이 힘은 자녀양육네트워크 만들기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음. 또한 행정기관과 일상적으로 연계해 자녀 양육에 관해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있으며 나고야시의 유치원과 보육소가 참가하고 있는 유아교육 연구 협의회지부에서도 일상적으로 공동연구와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함.

나. 지역사회 돌봄 연구

□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년 돌봄의 공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급속한 핵가족화

등으로 지역사회의 돌봄 기반이 약화되어 고립된 육아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 기반의 돌봄 공동체 회복이 요구됨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주요과제로 명시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음(국정자문위원회, 2017).

ㅇ 이는 부처간,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을 통행 학교 안과 밖의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자는 것임. 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돌봄지원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임.

□ 최근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친화마을, 가족친화마을(지역사회), 여성친화도시 등 지역사회에서 보면 각종 친화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이미화 외, 2018).

ㅇ 지역사회를 단위로 접근하고 정책사업들은 각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야 함

ㅇ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사업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연계할 부분을 찾아보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중 가족돌봄을 자녀양육과 노인돌봄으로 나누어 조사한 최인희 외(2015)는 자녀양육 지원 영역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지표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률 등을 조사함.

□ 강은진 외(2016)은 자녀양육지원 영역의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이용률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맞춤형 돌봄지원 영역에서의 지역별 공급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여 지역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을 도출한 바 있음. 이 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 수준 외에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보육, 온종일돌봄, 아이돌보미사업, 공동육아나눔터, 24시간 보육 등을 포함함.

□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 돌봄 인프라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음.

ㅇ 기관 보육 위주의 육아지원정책 하에서 지역 돌봄 공동체를 추구하고,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육아지원의 다각화 차원에서 공동육아 활성

와의 필요성을 제기한 유해미 외(2013) 연구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상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과 사업 확장이 힘든 점, 활동 공간의 부족 등도 지적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설되는 각종 참여 프로그램은 지역내 수요를 고려하여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연계기관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ㅇ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향미 외(2013)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와 개선, 이용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추진체계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초등돌봄교실의 과밀화, 돌봄인력의 처우 문제,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의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정수정(2014)은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각 부처별 돌봄서비스 표준화가 요구된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현행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수요자의 요구와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영시간의 조정을 요구한 연구도 있음(이채정, 2016)

다.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연구

□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아동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각 지역사회의 친화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고려한 구체적 목표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유니세프(unicef)임. 우리나라는 최근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도입 전후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비교하는 과정이 아동친화도시 설계 및 실행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피력한 김진숙(2017)은,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6개 영역 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참여는 보장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또한,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경우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ㅇ 이에 따라 연구자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가운데 물리적 환경의 경우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해야 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의 경우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확대해야함을 제안하고 있음.

□ 유럽 주요 도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정의 이슈를 분석한 박세경(2016)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단시간에 성과를 보여주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니세프로부터의 인증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조차 3~5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주요 쟁점이라고 하였음

- ㅇ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아동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남승연 외(2016) 연구에서는 해외 각국의 조성 특징을 파악하였음.

- ㅇ 과거부터 아동청소년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동해오던 민간 자선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던 캐나다 사례,
- ㅇ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별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부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합시키도록 한 필리핀 사례,
- ㅇ 모든 아동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교육을 위해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된 인도 사례,
- ㅇ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 이탈리아 사례,
- ㅇ 당사자인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지자체 파트너쉽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네덜란드 털버그 사례,
- ㅇ 놀이시설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설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놀이터라는 실용적이면서 통합된 물리적 매개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다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독일 뮌헨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세대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아동의 인권 실현이 어렵기 때문임(이미화 외, 2018).

ㅇ 환경의 변화 중 도시화로 인한 여러 병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발달 환경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사회는 미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 사회정책은 아동의 권리원칙을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정부의 실행계획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되어야 함(홍승애, 2013).

□ 이미화 외(2018)가 우리나라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 인식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 인식 및 평가: 7점 만점으로 조사한 모든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 평가가 부모의 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교육환경 영역(5.2>4.1), 놀이 및 여가 영역(4.8>3.8), 건강·보건·돌봄서비스 영역(5.7>4.3), 안전과 보호 영역(5.7>4.1), 참여권과 아동권리 보장 영역(4.6>3.6)

ㅇ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 인식 및 평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부모(48.8%)가 아동(40.7%)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아동이 부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참여권 5.4>4.8, 발달권 및 생존권 6.0>5.5, 보호권 6.1>5.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동 및 학부모가 동일하게 7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김응수(2017)의 연구 결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ㅇ 학교 유형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이 아동권리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

5. 나가며

□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체계가 중요하며, 아동은 직접 대하는 환경 내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나 사회적 가치, 정치적 환경 등 보다 큰 범위의 환경에서 상호작용 함으로써 성장한다고 강조한 최윤경(2019)은 양육지원정책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ㅇ 보육·교육·양육의 질 향상과 함께, 가정 양육의 중요성, 돌봄 체계의 확장을 제도화하고 보육과 돌봄, 가정양육이 양적·질적으로 담보되는 정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연령적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함.

ㅇ 양육지원 정책의 개편에 있어서 '아동중심', '아동행복', '아동권리'를 숙고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생애초기 아동발달에 대한 생태학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을 제안하였음.

- 이를 위해 양육지원 정책은 성인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지하는 정책설계와 함께 아동의 성장발달을 고려하여 균형감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양육지원이 비용중심에 머무르고 부모·국가·사회 간 역할분담에 대한 철학적 원칙적 논의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며 Hochschild(2003)의 4가지 돌봄 모형 을 제시한 최은영(2019)은, 그 중 '따뜻한 현대모형'은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화된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면서 동시에 남-녀가 사적인 돌봄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모형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형으로 제안하였음.

ㅇ 이를 위해 부모의 시간부족을 완화하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남-녀, 가족-사회가 나누고 모두 참여하는 사회로의 전환만이 지속가능한 양육과 돌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

□ 2013년 무상보육 도입 이후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확립이라는 사회적 아젠다 아래 아동양육의 태생적 목적, 즉 자녀양육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시각은 경시되어 왔음.

- ㅇ 현재 아동양육의 책임 주체가 부모냐 국가냐, 재정 부담의 주체가 중앙이냐 지방이냐, 공급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라는 논쟁을 떠나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논의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아동양육의 '책임 이양 내지 국가-부모 공동 책임'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함.

- ㅇ 부모와 국가 중 누가 아동양육을 담당하느냐의 책임 문제를 먼저 살피기보다 그 이전에 아동양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아동이 양육의 진정한 주체이며 목표임을 상기하여야 함.

□ 아동양육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주장과 연구 결과가 있음을 파악하였음. 본 학회의 주제를 위해 관련 연구의 일부을 분석한 결과이기는 하나, 연구자들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전공분야나 본인의 양육 관련 경험에 따라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ㅇ 물론 소속기관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소신과 철학이 달리 표현되기도 하지만 2019년 현재 초저출산시대에 우리나라 아동양육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와 통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바임.

참고문헌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Ⅵ: 지역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김동훈·김문정(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Ⅰ. 육아정책연구소

김민정(2012). 일본 자녀양육의 사회적 지원 현황.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영미(2016) 한국인의 보육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국가책임성, 정책선호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31-59.

김진숙(2017).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 비교: A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49-60.

김응수(2017).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485-491.

남승연·이나련·장미(201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문선화(2011) 국가책임제 보육에 관한 고찰, 한국영유아보육학 69, 167-189
박세경(2016).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유럽 주요도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3). 62-72.
심미경(2012). 행복한 삶의 베이스캠프로서의 가정양육.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송다영(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 한국여성학, 119-152.
유해미·김문정(2013).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윤향미·조문석·오재록(2013) 외(2013).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181-203
이성한(2018) 저출산·육아지원대책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147-166
이수경·오미옥(2013)(2013) 아동양육정책의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 공보육서비스 vs 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이미화·유해미·최효미·조아라 (2014).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의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이윤진·박상신(2018).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김나영·김문정 외(2018).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채정(2016). 저출산대책 평가 Ⅴ-가족·양육. 국회예산정책처
장영은(2012). 자녀 양육의 파트너로서의 보육.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장하진·이옥·백선희(2015). 한국의 보육정책. 공동체
정수정(2014). 초등돌봄교실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37, 1-4.
정효정(2013) 국가 책임보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인간과 사회 32, 105-121

최미미(2017)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보육소의 지역사회 개방. 비교교육연구 27(4). 285-310.

최윤경 (2019). 영유아기 아동양육의 쟁점 및 아동 중심의 정책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4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최인희·장혜경·김은지 외 (2015). 제3차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은영(2019). 토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4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4(4), 83-104

황옥경(2019)은 '양육지원 정책: 수사의 의미와 정책적 접근의 변화 필요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4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한 공동육아협동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적 육아의 의미

전 가 일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한 공동육아협동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적 육아의 의미[1)]

전가일(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1. 문제제기

OECD 여러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출산율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의 2분기의 출산율은 채 1명이 되지 못하는 0.97명으로 하락했다(통계청, 2019). 저출산을 야기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유아 부모의 육아 부담이다(류경희·김순옥, 2001; 이성규, 2014). 현대 산업사회에서 육아를 지지하고 함께 해줄 '확대가족'이나 '마을'이라는 삶의 구조는 와해되었고,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육아'는 각 가정에서 개별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 할 자신들만의 고립적 일이 되었다. 이러한 지금의 육아 고립 시대에 공동육아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적 육아를 실천함으로써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김미란, 2008; 오하나·배정환, 2013; 전가일, 2018).

'공동육아'는 내 아이를 단순히 타인에게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공동육아연구회, 1994). 공동육아는 '아이는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아공동체를 지향하는 부모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다. 공동육아는 '육아란 자기 자신의 아이들 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와 국가가 어울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키우는 일'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공동육아 조합원들에게 육아는 '내 아이를 키우는' 보육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들의 아

1) 이 연구는 2017년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계속해서 연구현장 방문이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해석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인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연구를 기꺼이 허락해 주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내어 준 구름자리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제게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말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삶의 일상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 실천을 지속하고 있는 구름자리조합원들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그분들의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단단하게 가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서로의 성장에 관심을 두며 돌봄(육아)을 실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누리집, 2019). 이러한 지향으로 인해, 공동육아는 통상적으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권과 운영권을 갖는 조합의 형태로 운영된다. 공동육아는 1994년에 신촌에 우린어린이집이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1970년대 말부터 빈민 탁아운동을 해 왔던 '해송어린이걱정모임'과 '공동육아연구회'라는 모체가 있다. '공동육아연구회'는 2001년 10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18년 현재, (사)공동육아공동체교육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공동육아시설은 조합 준비모임까지 포함하여 79개 조합에 이른다(http://www.gongdong.or.kr).

공동육아와 관련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공동육아조합의 형성과 운영에 초점을 둔 연구들(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 김기영, 2016; 김미란, 2008; 류경희·김순옥, 2001; 이성규, 2014; 임나은, 2014; 조윤경, 2011), 둘째, 공동육아조합에서 일어나는 유아 활동에 초점을 둔 경우(김현진, 2014; 이부미, 1999; 이부미, 2007; 임재택·심미연, 2007),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에 촛점을 둔 연구들(김미영, 2012, 2013; 오하나·배정환, 2013) 이다. 공동육아의 형성과 운영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공동육아조합에서 부모들의 공동체 형성과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거나(김미란, 2008; 류경희·김순옥, 2001; 조윤경, 2011), 공동육아조합의 다양한 운영에 대한 실태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 이성규, 2014). 이중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7)은 부모협동조합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고함으로써 공동육아 확장 시기의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는 초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기영(2016)의 연구는 최근의 공동육아 운영 실태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조윤경(2011)은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어떻게 가족 관계를 변화시키며 돌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육아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아버지들의 돌봄을 드러내었다.

공동육아조합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나들이 활동(이부미, 1999)이나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부미, 2007; 김현진, 2014), 공동육아에서의 연령통합 활동(임재택·심미연, 2007)에 대한 주제들을 논의하였다. 이부

미의 연구들(이부미, 1999, 2007)은 공동육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참여관찰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와 나들이 활동, 공동육아 교사들의 교육적 모색들을 드러냄으로써 공동육아의 초기 이해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육아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공동육아의 실제적 모델을 개발하거나(김미영, 2012, 2013), 공동육아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오하나·배정환, 2013). 오하나와 배정환(2013)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경제적 효율성,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공동체성의 증진,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보고 공동육아조합의 편의성, 유용성, 신뢰성, 흥미성, 고객편의성 등과 부모들의 육아 만족도와의 연관을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공동육아의 여러 요인들을 수치화 하여 이 요인들이 공동육아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요인들이 공동육아조합 주체들의 공동육아 경험으로 양화하기 매우 어려운 질적인 가치와 의미 부여에 관한 것들이어서 통계검증이라는 실증적 방식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이에 대한 종속 변인으로 공동육아조합원을 “이용자”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육아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에 벗어난 것이다. 공동육아조합의 부모들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가 아니라 공동육아조합의 설립의 주체이자 운영자들이다. 이들은 조합에서 제공하는 편의성과 유용성의 서비스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제도적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대신 공동육아조합을 꾸리고 운영하는 조합원들이다(전가일, 2018). 공동육아조합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에 기초한 접근은 공동육아의 복잡함을 단순화시키거나 공동육아의 특징에 대한 곡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육아(아이 함께 키우기)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 꼽히는 공동육아 현상을 제대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육아조합의 성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깊숙한 내부의 상황과 복잡성을 조합원들의 관점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지난 20여 년간 우리사회 육아의 대안적 모델로서 공동육아조합에 주목하여 공동육아조합 운영의 특징을 통해 평등한 인간관계나 기관 운영에서의 부모 참여 강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공적인 육아와 양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

와 당위성에 기반하여 공동육아조합을 외부자의 시각에서 살피면서 공동육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공동육아의 조합원들이 아이를 함께 키우며 사회적 육아를 실천하는 과정이 언제나 즐겁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공동육아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수 많은 갈등을 겪고(김미란, 2008; 전가일, 2018),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공동육아의 이러한 내부적인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고 공동육아 경험의 그 중층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는 '사회적 육아'라는 가치에 대한 당위 때문에 공동육아조합을 피상적으로 살피고 공동육아를 화려하게 포장하여 그에 대한 섣부른 적용을 할 위험이 있다. 사회적 육아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육아를 주목하게 되는 근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더욱 높아져, 공동육아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주목하여 공동육아의 독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공동육아 방식을 우리 사회의 일반적 유아교육기관 모델로 단순 보급·적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 공동육아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당위에서 시작하기보다 공동육아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하고 그 경험을 조합원들의 내부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갈등과 어려움까지를 포함하는 그 현상의 복잡성과 중층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Richter & Eriksen, 2003).

이 연구에서는 한 공동육아조합(구름자리 공동육아협동조합: 가명)을 장기간 참여관찰하여 공동육아의 세 주체인 부모, 유아,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시선에서 공동육아 경험과 공동육아의 사회적·교육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특별히 이 논문에서는 해당 공동육아조합의 독특성을 살피고, 조합원들이 경험하는 공동육아의 어려움을 살펴 본 뒤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조합을 지키며 공동육아를 계속해 나가는 이유에 대해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아이 함께 키우기'(사회적 육아)가 우리 삶에 지닌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스레 생각해 볼 것이다. 이렇게 공동육아조합 내부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육아 모델로서 공동육아조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면 부모들의 육아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육아공동체와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할 여건들, 대안적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확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육아라는 당위에서 공동육아 경험을 살피는 연역적인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구체적인 공동육아 현상과 경험을 살핌으로서 사회적 육아의 의미를 귀납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① 구름자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특징은 무엇인가?
② 구름자리 공동육아협동조합원들이 경험하는 공동육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③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공동육아조합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적 육아(아이 함께 키우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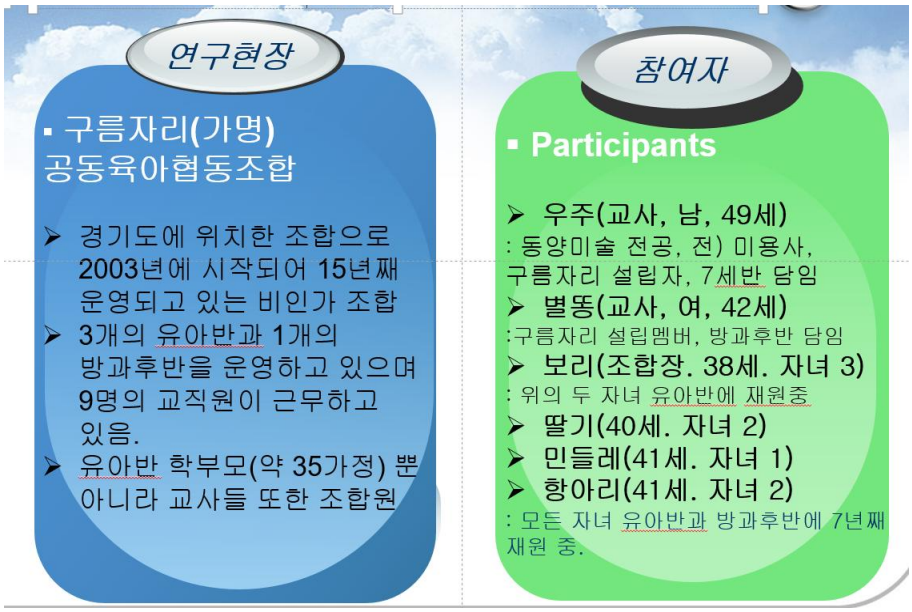
2. 연구방법

1) 연구현장 및 참여자

이 연구는 공동육아조합의 수가 가장 많은 소도시인 경기도 K시에 위치하며 13년째 공동육아조합을 운영해 온 한 공동육아조합(구름자리학교: 가명)을 주현장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과 해석에 있어 사례의 특수성에 매몰될 위험을 경계하고자 또 다른 지역의 한 공동육아조합을 부현장으로 선정하여 대조사례를 살필 예정이다. 주 연구현장은 연구자가 1년간 조합원으로 속해 있던 곳으로, 현재는 졸업생 신분이며 조합원들에게 연구 참여를 허락 받아 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구름자리학교는 경기도 K시에 위치하여 16년째 공동육아조합을 운영 중이며 6명의 교육 교사와 1명의 주방 교사, 2명의 운전 교사, 32명의 유아, 40여명의 초등학생 방과후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일주일에 2회 출석하는 방과후반 아이들 가정까지 합하여 대략 70여 가정의 조합원들이 있다. 구름자리학교는 재원생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교사 및 주방교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직원 전원이 모두 조합원이다. 모든 조합원들은 조합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이는 많은 공동육아가 부모 조합원들이 공동육아조합을 설립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구름자리공동육아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참여자들 각자의 사정상, 모두가 같은 강도로 연구에 참여할 수 없기에 몇

몇 조합원들이 면담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조합원들 중에 주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선정되었다. 교사조합원들 중에는 구름자리 설집자이자 설립 이후 교사로 계속 자리를 지켜온 우주(별명. 구름자리에서는 아이들과 교사, 부모 모두가 서로 별명으로 호칭함)와 별똥, 부모조합원 중에서는 2017년도 조합장인 보리와 7년 이상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는 민들레, 항아리, 딸기가 주참여자가 되어 주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 자료이다. 참여관찰 자료는 공동육아조합 운영 일상, 행사, 회의 모습 및 아이들과 교사들의 놀이시간 과 작업 활동 시간에 대한 참여관찰 자료다. 연구 1년차 동안 연구 현장을 대략 주 2회 방문하여 회당 2시간~3시간 정도의 관찰하였으며 지금은(2019년 4월) 비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관찰 시에는 기본적으로 필드노트를 작성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 녹음이나 비디오 촬영하여 전사하였다. 두 번째 수집 자료는 공동육아조합 부모, 유아,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이다. 면담은 공동육아 경험, 놀이와 교육활동, 공동육아조합의 설립 배경과 역사 등에 대한 대화를 내용으로 했다. 공동육아의 정규 시간 외에 시간 약속을 정하

여 면담하였으며 부모들과의 초점집단 면담(F.G.I./필요시 개별 면담)을, 교사와는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자료는 공동육아의 정관, 총회 자료 등의 공적 문서와 회의 자료, 조합원들 간의 소통 자료 등의 현지 자료이다. 현지자료는 주로 참여자들에게 제공 받았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종류의 방법에 내한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수집 자료의 종류 및 방법

자료 종류	자료 내용	수집 방법
관찰	조합원 부모들의 공동육아 활동	•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육아조합의 일상 모임, 행사, 회의 등을 참여관찰하고 녹음하고(회의), 관찰 일지 기록. 녹음 자료는 전사
	유아들의 놀이	•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육아 유아들의 자유놀이, 산행, 실내 작업 등을 참여관찰하여 관찰 노트 작성. 자유놀이와 실내 작업등은 비디오 촬영하여 전사.
	유아들의 산행	
	유아들의 작업 활동	
면담	공동육아 부모 면담	• 주현장의 정규 운영 시간 외에 시간을 따로 정하여 부모와는 초점 집단 및 개별 면담하고 교사와는 개별 면담. 모든 면담은 녹음
	공동육아 유아 면담(예정)	

자료 종류	자료 내용	수집 방법
	공동육아 교사 면담	후 전사
현지자료	조합 정관 및 총회 자료	• 공동육아조합의 모든 현지 자료. 조합의 정관, 총회 자료,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구성원들의 소통 노트인 날적이 등을 참여자들에게 제공받아 수집.(현재 정관, 총회 자료 등을 이미 제공 받음) 밴드와 카페에서의 공지 사항 및 논의 사항 등은 참여자들의 허락을 받아 다운 로드. 아이들의 활동 모습과 결과물(작품, 전시전)은 사진 촬영.
	아이들의 활동 모습, 작품 사진	
	운위 회의록과 날적이	
	밴드와 카페에서의 공지 사항 등	

질적 연구에서 자료는 그곳에 실재하는 것을 단순히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과 연구자의 상호주관으로 구성하고 생성되는 것이다(Koro-Ljungberg, MacLure, & Ulmer, 2018). 따라서 연구자와 참여자들 간의 상호-구성된 자료야말로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 연구는 공동육아조합에서 장기간(약 3년)의 참여관찰을 통해 내부자적 관점을 확보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세 주체인 부모, 유아, 교사와의 상호주관을 통해 자료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료수집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의사를 묻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다. 참여자들과 면담 후 전사 한 자료들을 참여자들에게 보여 주고 공개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지, 연구자가 대화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기도 했는데 연구의 주 참여자는 이러한 과정이 교사로서의 자신의 수행성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전체적인 구조화를 위해 기본 코딩하였다. 기본적인 코딩의 과정에서는 에믹 코딩(emic coding)과 구조 코딩(structural coding)을 실시하였다. 에믹 코딩은 자료에 나타난 참여자의 관점을 따라 관련 주제어를 분류하며, 참여자의 언어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구조 코딩은 연구문제에 답이 될 내용을 찾아 구조화 하는 작업으로서 참여자의 관점에 기초하는 에믹 코딩과 연구자의 관심에 기초하는 에틱 코딩(etic coding)이 상호보완적으로 겹치면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렬시키는 것이다(Saldana, 2009). 또한, 수집된 자료를 거듭 읽고 귀납적 범주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자료들에 나타난 주제어들 간의 관계를 찾는 범주 분석(categori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범주분석은 유사한 개념과 의미, 주제들의 관계를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적 연구에서 질적 자료를 거듭 읽어나가며 반복되는 의미와 주제어를 찾아 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을 찾아나가는 방법이다(Spradley, 1980). 즉, 전체와 부분들의 관계, 부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 분석이다. 이를 통해 공동육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공동육아를 유지하는 이유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본 코딩과 범주분석을 바탕으로 자료를 거듭 읽으며 자료를 관통하는 의미들을 주제화함으로써 공동육아 경험을 통한 사회적 육아에 대한 의미 해석을 시도하였다.

3. 연구결과

1) 구름자리 공동육아의 독특성

(1) 한해살이

월	일정 및 내용
3	해오름(입학산행) / 봄 텃밭갈이(봄 농사 준비) / 공동체 교육
5	봄소풍 / 운동회 / 고구마 심기
6	매실청 담기 / 엄마의 밤(엄마 및 여성 교사들의 1박 캠프)
7	마을 어르신의 날(초복) / 여름 들살이 / 방학/ 방과후반 도보여행
8	여름 계절학교 / 개학 / 가을 텃밭갈이(가을 농사 준비)
9	공동체 교육 / 아빠의 날(아빠와 아이들의 야간 산행)
10	졸업여행 / 고구마캐기 / 방과후반 가을 들살이
11	입학설명회 / 김장잔치(배추 수확 부터 절이기와 양념하기)
12	가족모임 / 방과후반 밤마실 / 유치부 특별수업 /겨울방학식 / 방과후반 도보여행
2	개학(1월) / 정기총회 / 새내기 길라잡이 / 큰맺음(졸업식) / 작은맺음(수료식)

(2) 조합원 구성 범위

구름자리는 35명 유아반의 가정과 방과후반까지 대략 60여 가정이 있는데 재원생들의 부모 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모두 조합원이라는 점이 매우 독특한 점이다. 이는 여타의 공동육아조합과 차별되는 것으로 6명의 교육 교사와 1명의 주방교사, 2명의 운전 교사, 32명의 유아, 40여명의 초등학생 방과후반 아이들의 60여 가정이 모두 조합원이다. 일주일에 2회 출석하는 방과후반 아이들 가정까지 합한다면 대략 70여 가정의 조합원들이 있다. 이처럼 재원생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교사 및 주방교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직원 전원이 모두 조합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이는 많은 공동육아가 부모 조합원들이 공동육아조합을 설립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과 다른 독특한 점이다. 여타의 많은 공동육아조합들은 부모들이 출자하여 공동육아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어 교사들을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교사들은 대부분 조합원이 아니며 따라서 조합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구름자리는 모든 교사들이 조합원이며 조합의 주요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구름자리학교 설립자이자 유치부교사인 우주는 구름자리의 전신이었던 대안학교의 학부모였으며 나머지 교사들은 한명(이 한명의 교사 또한 구름자리의 전신이었던 대안학교의 교사였다)을 제외하고 모두 부모조합원들로 자신들의 자녀들이 모두 구름자리를 졸업했거나 재원 중인 경우다. 이러한 맥락으로 구름자리조합은 부모조합원과 교사 간의 경계가 애매하고 부모조합원과 교사들 간의 관계도 긴밀하다. 이로 인해 다른 공동육아조합에 비해 교사에 대한 부모조합원들의 요구 정도가 낮은 편이며 조합운영과 교육활동 모두에서 교사들의 주도권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3) 낮은 출자금과 흑자 운영

국내의 많은 공동육아조합이 적자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심하는 것(김기영, 2016)에 비해 구름자리는 대부분의 해에 소액의 흑자로 운영 중이었다. 또한 많은 공동육아조합들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럿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구름자리는 두 대의 등·하원차량의 할부금액을 제외하고는 따로 확인되는 부채도 없다. 게다가 많은 공동육아조합들이 아이의 입학 시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구름자리의 입학 시 출자금은 100만원으로 진입 문턱도 낮았으며 월간 교육비는 다른 공동육아조합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름자리의 이러한 부채 없는 흑자운영은 부모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수익 사업과 교사조합원들의 자발적 임금동결 등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와 같은 내부적 해결 덕분이다. 주참여자인 민들레 등의 일부 부모조합원들은 식

품의 공동구매, 수작업품 내부 판매, 알뜰 장터 등을 통한 자발적 수익 사업을 벌여 조합을 위한 후원금 마련을 지속해 왔다. 최근(2017년도 중반)에는 구름자리학교 터전 외에 시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시도하며 조합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강좌 등을 함으로써 조합의 후원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취원 원아의 수 자체의 감소로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구름자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2018년도 원아모집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충원 상황이 되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9년도 원아모집에서 다시 한번 미충원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교사조합원 한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교사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2019년도 운영비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4) 비위계적 교사 관계

구름자리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원장과 같은 의사결정의 상위 기구나 최종 의사 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당연하게도 원장, 주임, 선임과 같은 교사의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름자리의 설립자이고 이제까지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우주도 원장은 아니다. 교사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교육교사나 차량, 주방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비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부모조합원들과의 소통의 편의상 교사대표를 정하고 있는데 이 역할은 교사들이 한해에 한번 씩 돌아가며 맡는다. 대략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교사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학교에 관한 그 어떤 일도 의논될 수 있다. 교사회의는 대부분 아주 오랜 시간(대부분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는 작은 사안에도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어 사안에 대한 결정이 쉽사리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참여자인 별똥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징하도록”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위계적 교사 관계는 때로 의사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하거나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오기도 하며 서로를 지치게도 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비합리적”으로 평가받기도 하나 많은 주참여자들은 이를 “조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존중해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위계적 교사관계는 대부분의 다른 공동육아조합도 마찬가지로, 이는 구름자리만의 독특성은 아니나 구름자리는 교사 중 한 명이 설립자이자 터전주인임에도 위와 같은 비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5) 결정 사항에 대한 비문서 문화

구름자리는 교사회의나 학부모 운위 등에서 결정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문서화

하지 않는다. 교사회의록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조합의 최종 의견수합과 결정은 운영위원회와 반모임이 반복되며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의 결정 사항 전달은 대부분 면대면 구두로 이루어지고 홈페이지나 학교 밴드에서의 간략한 메모가 전부이다. 이에 대해 딸기와 별똥은 “운위구성원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한 운위가 그 전 운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구름자리에서 특별히 명문화된 문서는 조합 정관뿐이다. 당연히도 구름자리의 교육철학이나 목적 등을 설명하는 자료도 따로 없다. 이러한 구름자리의 비명문화 문화는 이들의 주요 지향 중 하나다. 무엇인가 명문화된 교육철학이나 목적이 앞서 있고 이를 구성원들이 따르는 방향이 아니라 그때그때 구성되는 사람들의 독특성에 따라 교사회의 및 운위 방법, 동아리들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료 1>

"여기에 초임으로 오시는 선생님한테 기존의 선배들이 뭐가 눈에 보이게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우주도(오래된 교사도) 눈에 보이게 가르쳐 줄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 지내면서 매일매일 어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다 다르고....우주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스타일인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또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주한테 이야기하듯이 알려줄 순 없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별똥)

2) 조합원들이 경험하는 공동육아의 어려움

위와 같은 독특함을 가진 구름자리의 조합원들이 함께 조합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항상 즐겁고, 서로 잘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순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동육아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의 부담 : “꽤 부담스런 비용이죠”

공동육아조합들 중 정식으로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는 경우도 많으나 구름자리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있다.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의 형편상 그 조건들(특히, 교사 자격 기준)을 다 맞추기 어려울 뿐더러 그런 과정에서 조합이 추구하는 지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름자리공동육아의 모든 운영비는 전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

다. 매해 말 총회에서의 결산과 예산을 통해 다음 해의 교육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조합은 언제나 긴축재정 상황이므로 총회는 매번 모든 조합원들을 긴장시키는 큰 난관이다. 특히나 신입원아의 미충원이 발생한 해의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더 증폭된다. 교육비는 구름자리의 한해 총 지출 예산을 부모조합원들이 1/n 로 분담한 액수로 책정하게 된다. 2017년에는 월 약 44만원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상보육임을 감안할 때 이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참여자들과 같은 조합원들도 이 교육비에 대해 “꽤 부담스러운 비용이죠”라고 이야기 했다. 입학 전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입학 후에 공동육아 식구가 된 조합원들도 이 교육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조합장인 보리는 교사들의 교육 방식에 불만이 있거나 조합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조합원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런 돈을 내고 여기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후회라고 하였다. 바꾸어 보면 이러한 비용의 부담은 조합원들이 이 공동육아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이 그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은 “공짜로”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부담스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보낼 정도로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만 3세 신입원아의 엄마인 종이배는 이에 대해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런 돈을 내는 게 후회가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2) 참여의 부담 : “모임이 너무 많은 거야.”

구름자리의 부모조합원들은 학교와 조합 단위의 행사와 운영에 의무적,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한 해 동안 월 1회의 반모임과 조합 내의 소위원회(입학위, 텃밭터전위, 홍보위 등)에 1개 이상 소속되어 소위원회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많은 조합/학교행사(공동체 교육, 운동회, 텃밭갈이 등)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은 이러한 참여 의무가 있는 활동 말고도 산행, 반찬 만들기, 수공예, 밴드 등의 자발적인 소모임과 동아리들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와 소모임을 외에도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며 수익사업을 통해 조합 예비비를 마련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근래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는 이러한 자발적 수익 사업과 동아리, 소모임, 친교모임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합원에게 요구되는 행사 참여의 의무와 많은 모임들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나 둘 다 직장이 있는 부모조합원들의 경우는 많은 활동과 모임에 대한 참여의 부담이 더욱 크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참여의 정도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르는 것이니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이해하기도 하나 어떤 조합원들은 "때때로 조합일이 너무 많아서 나도 힘이 들 때는 어떤 가정들은 나 만큼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서, 프리라이딩을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하였다. 큰 아이 때부터 구름자리에 입학하여 조합원이 된지 8년 이상이 된 딸기는 이러한 많은 모임과 학교일의 참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겠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은 재미나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프리라이딩을 한다기 보다 함께 하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자료 2>

"그리고 오니까(입학 하니까) 모임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부담되진 않았어요?) 난 첫째였고 에너지가 넘쳤고...그런 것도 있어요. (입학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에 대한 미안함...떨어진 사람과 내가 다를 게 없었어. 단지 내가 더 간절해 보였을 거야. 면접 때 질문이 두 개 였어요. 이 학교에 왜 들어오고 싶은가? 이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입학 후에 합격한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더 간절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 미안해서 더 그런 것도(참여하는 것) 있었고, 또 일반 유치원은 그냥 커리큘럼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궁금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는 텃밭 가서 고구마도 심고 이것저것 하잖아. 그게 너무 궁금했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교사들이) 못 오게 하는 데도 계속 가고...(웃음)....마을 어르신의 날 할 때도 '삼계탕하면 위험하다고 애(동생) 있는 사람은 오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땐 00이(둘째)가 10몇 개월 됐는데 엎고 갔잖아, 하도 궁금해가지고..." (딸기)

(3) 책임의 부담 :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다 내 일"

구름자리조합은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체계적 혹은 위계적 구조가 없고 주요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는 구성원들이 따로 있지 않다. 누군가가 특정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조합에 당면 문제가 생기거나 결정해야 할 일들은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 하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의미에서 서로서로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별똥의 표현처럼 조합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하나까지 모두 다 내 일이' 된다는 면에서 공동육아의 책임은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조합원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 갖는 구조는 이들을 마치 공동운명체처럼 엮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해 말의 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한해의 교육비는 그해의 지출 규모 뿐 아니라

아이들(조합 가정) 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조합원들은 퇴소를 고민할 때에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 학년이 바뀔 때 재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 수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곧 교육비의 상승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과 퇴소 여부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재원과 퇴소를 고민하는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다. 교사인 별똥은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책임 나눠지기가 구름자리공동육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별똥은 많은 조합원들이 학교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각자 자신의 일로 여기며 의견을 내고, 공동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마다 함께 덤벼드는 것이 구름자리의 가치 지향이라고 이야기했다.

<자료 3>

"누군가가 원장님, 교장 이런 분이 있으면 그 원장님의 스타일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교사 개인개인이 크게 의견 낼 일도 없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가 발 벗고 나설 일도 아니고 그럴텐데 근데 이 곳은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다 내 일이 되야 되는 건데...근데 그 일이 보면 우리가 한 15년 즘 있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건이나 문제들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크고 작은 일이 매해 생겨요. 올해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의 온 정신이 다 거기에 쏟아 부어졌어. 그러면 그것과 똑 같은 일은 발생 안하지만 사람이 많은이 뭐...(조합)가족이 지금 유치부, 방과후 합해서 60,70가족에 교사 9명이 부적북적하면은 사람에 대한 일만 해도 매일매일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생하는 일이 여기는 또 졸업하고 나가고 입학하고 나가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교사들은 오래 있지만 그러니까 늘 있는 일 같지만 사실 항상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발생하는 일마다 다 같이 덤벼들어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별똥)

(4) 관계의 부담 : "공동체의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위와 같이 구름자리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학교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사/부모조합원 모두 조합에 관여하는 정도가 깊다. 때문에 공동육아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생기고 의견이 부딪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어찌보면 이들의 관계 갈등은 오히려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부모들은 기관 운영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잘 드러낼 기회가 없고 표현하지도 않는다. 또한 같은 반의 부모라 할지라도 서로 어린이집 일을 같이 한다거나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관계 맺지 않는다. 일반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등·하원시간에

인사를 주고받거나 어린이집 행사에서 적당히 인사하고 아이들의 생일초대 등에서 서로 가벼운 이야기 등을 나누는 정도로만 관계 맺을 뿐이다. 구름자리 조합원들이 공동육아 과정 동안 경험하는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은 갈등을 일으킬 만큼이나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 얽힌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료 4>
"(일반 유치원이랑 달리)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반대되는 일을 만났을 때 다른 데서는 피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해결해야만 하잖아" (딸기)

딸기는 보통의 어린이집 같으면 관계가 안 좋거나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피하면 되고 거리를 두면 그만 이지만 공동육아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결국 만나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하기에 피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나와 다른 관점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항아리는 지난 7년의 공동육아 과정 동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껴안고 함께 가야 하는지를 배웠다"고도 했다. 이러한 관계의 갈등을 두고 민들레는 공동육아 공동체의 "민음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5) 불안정감: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에 대한 불안"

구름자리 공동육아는 붙박여 정해진 교육철학이나 교육목적이 없고, 또 조합 운영에서의 세밀한 규칙도 없으므로 사건이나 사안이 생길 때 마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대처한다. 이렇게 그때마다의 개별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새롭게 대처하기 때문에 조합 운영에 불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많은 구성원의 다양한 바람과 실천들로 조합 내에는 항상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는 기간에도 졸업생들을 위한 작은 공간에 대한 필요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거점으로 조합원들은 K 시내에 새로운 별도의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했다. 이러한 식으로 조합원들은 공동육아 과정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한 새로운 사업은 또 다른 활동들을 생성하며 이어지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공동육아가 정해 놓은 궤도를 따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사람들의 얽힘으로 인한 생성의 기운이 역동하는 곳임을 이야기했다. 별똥은 이를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료 5>

"알 수 없는 일이,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이 있는(일어나니까)...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학교인거죠. 계속 내일 또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또 뭘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고 하고, 공간 만든다고 하고...'뭘 또 할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 해도 되는 고민 그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을 것 같애요." (별똥)

그러나 이러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은 조합원들이 정해진 공동육아 과정을 따르기보다 자신들 각자의 다양함이 드러나는 실천과 실험들이 가능한 문화적 토대가 되어 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면 각자 필요한 돈을 각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일들을 구름자리 조합에서는 부모들이 함께 하는 크고 작은 모임이나 협력활동을 통해 하면서 자신들 만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별똥은 이에 대해 "또 그게 얼마나 또 재밌어요?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잖아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6) 비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 :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구름자리는 공동육아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이 각반 모임과 소위, 교가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반 모임 내에 사안이 이야기 되어야 하고, 조합원들 간에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주참여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분명 "힘들다"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조합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동육아조합의 결정은 누군가 한사람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사회 내에서도 어떤 한 가지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난하도록 이야기한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이러한 의사결정 문화에 대해 별똥은 "아무도 뭔가 결정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자료 6>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게 있어요. 누군가가 원장이 운영하면 원장스타일대로 그냥 하면 되는*

데, 우리는 모든 얘기를 다 들어서 그걸 결정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지." (민들레)

<자료 7>

"그러다보니까 아무도, 아무도 뭔가 결정을 하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15년 된 교사도 결정 못해, 1년된 교사도 결정을 못하고 모두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걸려. 그 사이사이에 감정은 감정대로 상해...왜 재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안 해 그렇게..그러다보니까 너무 감정들이 보일 수 밖에 없어요...(중략)...그리고 (교사회에서도)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오래 있던 교사는 '나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도나도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해야 하니까, 또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얘기하라고 하고...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물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은 뒤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 같애요. 내가 제안한 어떤 것들이 제외되거나 하더라도 지난하게 얘기한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 다시는 얘기 안 하고 싶은 마음....(웃음) 굳이 만장일치는 안 가지만 거의 이에 가깝게 되도록...(별똥)

<자료 7>에서 별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름자리 교사회의는 아무리 오랜 경력 교사라 할지라도 혼자 결정권을 가지거나 더 많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너도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교사회의에서 경력이 오래된 교사가 말을 아끼거나 신입교사들이 의견 표현을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교사회의는 매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회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결정에 대해 구성원들 간에 크게 이의가 없는 수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교사와 부모 조합원들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많은 , 매우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참여자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자료 8>

(중략)...누군가가 결정권자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중략)...효율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따로 만들려면 그래야겠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별똥)

3) 공동육아 유지의 이유들

공동육아 과정 중에 경험하는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구름자리조합원들이 공동육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수익사업을 해 가며 자리를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걸까?

(1)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 "내 아이한테 좋으니까"

구름자리 부모조합원들이 공동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각기 다양하다. 실제로 그해의 조합장을 맡은 부모조합원은 “거의 직장 생활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조합의 일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2017년도 조합장이자 연구의 주 참여자인 보리는 “내 직업이 조합장인 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공동육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학교에 잘 방문하지 않는 일부 부모조합원원들의 경우에는 조합 일에 대해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와 같은 정도의 참여 수준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조합장부터 약한 유대만 유지하고 있는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리는 공동육아조합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조합원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구름자리가 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자료 9>

"(부모조합원들이 탈퇴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아이가 좋아해서'에요. 결국 우리 아이한테 좋으니까, (부모로서) 나의 이 불편함과 부담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감수하는 이유는)...매년 (조합 총회 마다 교사 조합원들과의) 급여 협상을 통해서 원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와중에도, 그 마음 고생을 하면서도, 1년 동안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u>결국은 내 아이한테 좋으니까</u> 계속 있는 거죠."
(보리)

(2) 공동체적 관계형성: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디 가서 또 만나겠어요?”

참여자들은 공동육아를 통해 자시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을 때,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의 옆집 엄마들과의 교류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편안함과 환대와 이해를 구름자리에서 경험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과 서로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고민

과 관점을 나누면서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맺는 견고한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서로를 환대하고 이해하고, 삶과 교육의 뜻을 같이 하는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서로의 아이를 돌보거나 물건과 반찬을 나누는 등 삶을 함께 하며 때로는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살기로 한다. 실제로 주참여자인 항아리와 민들레는 8년 전에 구름자리에서 만난 동갑내기인데 이들은 한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가족이 뒤따라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식으로 근거리에 살면서 서로의 가족에게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되어 함께 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육아를 통해 형성된 조합원들과의 관계는 "식구 같은" 것이고, 이 관계가 공동육아 과정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는 이유가 된다. 이들은 “식구 같은”, “다른 어디 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기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를 유지하고 조합을 지키고 있다. 서로서로가 “옆에 있는 조합원 식구들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인 셈이다. 비교적 신입 조합원인 종이배도 조합원이 된지 몇 개월 만에 조합에서 만난 사람들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런 돈(부담스런 교육비)을 내는 게 후회가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항아리는 조합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육아 밖에서 만난 엄마들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환대와 편안함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에 딸기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관점이 통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이에 대한 제한도 덜하게 된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가족 같은” 사람들임을 말했다.

<자료 10>

항아리: *사실 처음에 저는 자연학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겠지만, (공동육아) 밖에서 엄마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진심을 얘기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뭘 모른다 그러면 ‘뭐야?’ (항아리가 눈으로 위아래를 쳐다보는 표정을 흉내내자 다 함께 웃는다)....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걸 몰라?, 애한테 관심도 없어?’ 그런 거...그런데 내가 자연학교 와서 뭘 물어보면 엄마들은 정말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답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안한 느낌,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주는 경험을 자연학교 엄마들한테 처음으로 받았던 거 같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했어요.*

딸 기: *난 놀이터에서 애가 막 신발 벗고 놀려고 할 때 (공동육아 밖) 딴 엄마들은 신발 못 벗게 하잖아요, 더러우니까. 그런데 언니들은(조합원) ‘발*

자극되고 더 좋아' 이러잖아. 그래서 덜 부끄러워, 이 사람들하고 놀면. (다함께 웃음) 그리고 아이를 덜 제한해도 돼. (웃음) 아이가 막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닐 때 이 언니들하고 놀면 그냥 놔 두거든요. 근데 아파트사람들하고 있으면 신발 신기게 돼.

(중략)....

딸 기: *항아리나 민들레는 정말 가족 같은, 내 부끄러운 모습도 다 보여주는...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디 가서 또 만나겠어요?*

(3) 자기 성장의 장: "내가 성장했다고 느꼈거든요":

주참여자들은 대부분 조합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공동육아에 대한 특별한 뜻이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아이를 위해 "주위에서 좋은 기관이라고 추천해서" 오게 되었다고 했다. 양육에 대한 시야도 좁아서 조합 아이들을 대할 때도 자신의 아이를 중심으로만 바라보았으며, 사회 문제나 현상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공동육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던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의 초점이 아이들에게서 자신들로 옮겨 가고, 나아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만큼 시야가 넓어졌다고 한다. 또한 공동육아 과정에서 경험한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배우고,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항아리는 자신이 구름자리의 공동육아를 통해 내 아이와 내 가정만 생각했던 데서 나아가 이웃의 아이,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서 스스로 많이 바뀌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자료 11>

"다니면서 구름자리 안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전 처음에 아이 때문에 왔죠. 자연에서 노는 걸 선택하고 싶어서. 처음엔 아이만 좋은 곳에 보내면 그 아이가 잘 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아이도 잘 뛰어놀려면 내가 잘 뛰어노는 부모여야 내 아이도 내가 원하는 제대로 노는 아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아이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제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연학교 안에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죠)...내가, 아까 얘기하기를 주변 아빠들 때문에 아빠들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원래 책이나 신문 이런 시사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내 아이만 바라보고 내 가정만 바라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아이가 잘 크면 됐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둘러볼 수 있게...'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얘기들이 옆에서 자꾸 들려오는 거에요. 관심이 없었다가도 나도 같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서 내가 가진 시야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점차 그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구요...(중략)...그런데 실제 내가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한테 '다른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고 이야기 할 때, 좀 더 당당하게 얘기 해 줄 수 있는, 부모로서 약간은 당당해진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어요." (항아리)

항아리는 본인이 공동체에의 부댓김 속에서 노력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부분을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별똥은 이러한 공동체적 성격을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해석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진짜 보려면 어른들도 그렇게(아이들처럼) 살 수 밖에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4) 아이 함께 키우기: "내 아이를 나눌 사람이 생겼다"

구름자리 조합원들이 공동육아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공동육아조합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로 거론한 공통적인 것은 공동육아조합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아이 양육의 짐을 나눠 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보리, 민들레, 항아리 딸기 등의 부모조합원들 모두가 이를 공통적으로 거론했다. 참여자들은 구름자리를 다니면서 자신의 아이에 대해 자신만큼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이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딸기는 구름자리에 오기 전에는 자신의 아이를 챙기기에도 급급했는데 조합에 들어와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챙기고 케어하는 것을 보면서 돌봄 받고 있음에 안심이 될 뿐 아니라 그런 와중에 어느덧 자신도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게 되었다고 했다. 딸기는 자신들은 비록 서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수시로 만나고 접촉함으로써 정서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다'고도 표현했다. 딸기는 특히 구름자리가 3년 담임제로 한 교사가 아이를 3년 내내 맡는 것의 장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3년 담임제로 아이를

맡는 교사조합원들은 보통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와는 또 다르게 자신의 아이를 자신만큼 이나 자세히 알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댈 곳이 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정말 내 아이를 나눌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자료 12>

"*내 아이를 나눈다는 것을 믿는 거. 반달이라는 담임을 통해서 나만큼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 정말 내 아이를 나눌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 " (딸기)

조합장인 보리 또한 이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는데 조합에 오기 전에 “서로 다 타인일 뿐”인 사회에서 아이 양육은 자신에게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다고 한다. 보리는 구름자리에 와서 내 아이를 함께 바라봐주고 이해할 “옛날 마을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은 그저 예전처럼 한 동네에 살면서 자신의 아이를 같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구름자리에 와서 이러한 것을 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외롭게 있다가 이곳에 와서 기댈 곳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보리는 또한 이를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료 13>

“그런데 지금은 (양육 환경이 옛날 마을처럼) 그러지 않아. 지금은 서로 다 타인일 뿐이고 오롯이 엄마가 다(혼자 알아서) 키워야 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그 품이라는 게 좁아 보이더라구요. 내가 하 수 있는 영역이 좁고... 그래서, 구름자리 선생님들 이렇게 봤는데 어떤 연유에서건 난 그냥 선생님들이 보니까 학력이나 이런 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원 보다는 덜했지만...(중략)...전 그냥 옛날 같이 한 동네에 살면서 내 아이를 이렇게 같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싶었어요. 나는 거기에 초점을 뒀고 지금 3년 동안 그 부분에 관한 혜택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혜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합장으로 나설 수 도 있었건 거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컸어요. 아이를 같이 키워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괜찮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고, 요구하는 엄마로서의 기준들 마저도 다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 해주는, 나를 너무 닦달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그 경험을 했지...(중략)...결국은 내가 구름자리가, 이

시기가 없었으면 나는 다른 유치원에 가서 아이에게 영어와, 미술과 체육과 그런 것들을 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이걸 안 시키면 심지어는 저 엄마들이랑 관계도 못 맺어. 그러면서 꽤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나의 이 3년의 아이 키우는 시기는 꽤나 행복하게 된 거죠." (보리)

위의 자료에서 보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를 같이 키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현대 양육의 책임이 개별 가정, 특히 개별 가정의 엄마들의 일로 귀착되면서 양육이 개별 가정의 몫으로 맡겨진 이 육아고립의 시대에는 더더욱 큰 바람이 되었다(전가일, 2018). 이런 육아 고립의 시대에 내 아이에 대해 어떤 판단이나 평가 없이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기다려 주고, 나 만큼이나 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귀하게 여기며 함께 돌봐주고, 나의 양육의 고단함에 대해 "괜찮다"며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부모들에게 매우 큰 안위이며 기댈 곳일 뿐 아니라 양육의 사회 안전망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구름자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삶'과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공동육아조합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치고 나갈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5) 나를 넘어선 우리에 대한 생각: "내 아이 개념을 지나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공동육아의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 양육/육아의 시야가 넓어진 경험을 이야기 했다. 보리, 민들레, 딸기, 항아리 모두 자신의 아이를 키우기에 급급하고 자기 아이만을 보던 좁은 시야에서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나 만큼이나 이해하고 돌봐주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다른 아이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내 아이'의 개념을 넘어선 '우리의 아이' 개념을 체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딸기는 "이제 내 아이란 개념은 지나버렸어"라고 표현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육아조합에서 아이를 키운 것을 일종의 "혜택"이라고 의미 부여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러한 혜택을 다른 조합원들, 그리고 이러한 공동육아 방식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타인들과 나누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주참여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조합원 활동을 해온 민들레는 이러한 책임감을 매우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조합원 중 하나이다. 민들레의 자녀는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구름자리 유아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조합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민들레는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이 질 좋은 식자재

를 공동구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판매처 등을 개발하여 조합원들의 공동구매를 돕고 있다. 공동구매를 통한 수익사업은 조합원들이 공동구매 시에 구매 액에 일정금의 후원금을 추가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들레는 이뿐 아니라 반찬 만들기, 천연 화장품 만들기, 수공예품 만들기 등의 소모임을 만들고 소모임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조합 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후원금을 모으기도 한다. 이러한 몇 년 간의 꾸준한 수익사업을 기반으로 조합은 지금 원아 통학에 사용하는 두 대의 봉고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민들레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혜택"을 누린 후 스스로 조합에 가진 책무는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들레는 자신의 아이가 구름자리에서 공동육아의 혜택을 입어 잘 자란만큼 이것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누리게 할 모종의 사회적 책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료 14>

"내 아이가 이 안에서 잘 자랐잖아요? 이 아이가 여기서 잘 자랐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이 안에서 잘 자라게끔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 교사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사 생활을) 못하게 됐을 때 저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하지 않을까 마음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게(구름자리 교사)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서 선뜻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여기서 내 아이가 잘 자랐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계속 그런 생각으로 이 구름자리에 있는 거에요. 구름자리에서 내 아이가 받은 혜택을 다른 아이에게도 계속 받게끔 하고 싶은 거죠." (민들레)

4. 잠정적 결론(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적 육아의 의미)

구름자리공동육아 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육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육아를 아이 함께 키우기로 보고, 참여자들이 보여주었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아이 함께 키우기'가 의미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주제화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잠정적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아이 함께 키우기는 서로 둘러보기: 내 아이를 넘어 우리의 아이로

참여자들은 공동육아 과정에서 비용, 참여, 관계, 책임의 부담을 감당해야 했을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비체계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인한 의견 수합과 사안 결정의 어려움 등을 경험했다. 이러한 어려움들 중 비용, 참여,

관계, 책임의 부담감은 대부분의 공동육아조합이 겪는 것들인데 반해 불안감이나 비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은 구름자리의 특수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공동육아조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육아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형성, 자기 성장, 아이를 함께 키우는 안정감, 아이들 앞에서의 자기 성찰 등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공동육아 경험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내 아이'를 넘어서는 '우리의 아이' 개념 생성이었다. 즉,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아에게만 향했던 좁은 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로 향할 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이는 조합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이를 다른 조합원들이(다른 가정의 부모와 교사가) 자신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해하고 돌보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이다. 처음에는 일반 어린이집을 다녔던 때와 같은 기대만을 가지고 교사를 바라보던 조합원들도 이러한 경험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아이를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타인이 생겼음을 체험하게 되면서 신뢰가 쌓이고 스스로도 어느덧 다른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서로서로를 거대한 돌봄의 가족과 같이 여기게 된다. 공동육아 전에 겨우겨우 힘들게 외로운 고립육아를 이어왔던 이들에게 이러한 서로 돌봄은 '기댈 곳이 생겼다'는, 다른 것으로는 대치할 수 없는 안정감을 준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아이 함께 키우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느덧 옆의 아이를 둘러보고 돌보게 되는 '서로 둘러보기'인 것이다.

<자료 15>

딸 기: 내가 보면 5세 때 더 날을 세우고 있었던 거 같애. 여기 보내는 사람들은 일반유치원 보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대와 더 많은...그래서 갔는데 1년 동안 학교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지. 1년이 지나니까 학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저절로 해소되는 거지. 처음에는 아, 뭐야, 8시에 와서 보일러 틀어 놓으면 애들이 따뜻할 텐데 왜 9시에 트는 거야! 그런 걸로 흥분하고 그리고 신발이 젖었는데 왜 안 갈아 줬어? 막 이런 걸로 (화 내고) 그런 게 5세 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6세 때는 담임을 알게 되잖아. 그래서 아 뭔가 있었겠지, 일부러 그랬겠나 그런 게 생기면서 점점 믿음이 생겼지. 내 아이를 나눈다는 것을 믿는 거. 반달이라는 담임을 통해서 나만큼 내 아이를 통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 정말 내 아이를 나눌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

민들레: 그리고 (담임교사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아이를....

연구자: 진짜 공동의 육아네요.

민들레: 왜냐하면 3년을 담임을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딸 기: 그리고 부모 모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애들 같이 놀 때 별명으로 부르니까 여기(민들레) 남편이 바위거든요, 우리 큰 아들이 바위한테 너무 편하게 삼촌처럼 대하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 아이 겨우겨우 케어하는 정도였는데 주변에서 자꾸 우리 애를 케어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옆 사람을 둘러보고** 아, 이런 건가? 애들은 같이 키우는 건가? 애는 마을이 키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책을 읽은 적도 없었어. 그런데 여기 왔는데 여긴 날 위해 준비된 곳. 이었어(다 함께 크게 웃음). 왔는데 그렇게 셋팅이 다 되어 있더라고, 난 정말 끼기만 하면 됐었어.*

2) 아이 함께 키우기는 다양성 인정하기: 모나들이 수렴하는 세계

구름자리 조합원들이 공동육아 과중 중에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부담스런 부분은 경제적 부담을 제외한다면 관계의 문제이다. 참여의 부담이나 공동체의 피로감,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도 결국 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조합원들 간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 그만큼의 가까운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관계의 갈등 중에 핵심은 결국 나와 다른 성격, 지향, 의견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나의 공동육아를 꾸리고 조합 내에 공존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조합 내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타자들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주참여자인 항아리는 자신이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성장했음을 이야기 하면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거나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없다하더라도, 조합원으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관계를 맺는 태도가 성장해 나갔음을 이야기 했다. 항아리는 이러한 성장 덕분에 자신의 아이에게도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타인을 배려하라”는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구름자리조합원들이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보여준 아이 함께 키우기는 공동의 육아 속에서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함으로써 개개인들이 저마다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다양성 인정하기’이다. 이들은 나와 다른 의견과 지향을 가진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나와 같은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도 아이들을 매개로 협력하면서 의견

을 조율해 나가는 역동적인 공동체이다. 이러한 구름자리의 다양성 인정하기에 대해 별똥은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교육 지향임을 이야기 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아이들 개개인이 다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려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음 자료에 있는 별똥의 언급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자료 16>

*"우리는 아이들의 삶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답이 없게(답이 정해져 있지 않게)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저 아이가 이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 또 이런 아이야...아이들처럼 부모님들도 또 그런 거에요....(중략)....아빠 같은 교사가 있으면 엄마 같은 교사도 있고 고모 같은 교사도 있고, 친구 같은 교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긴 그러한 곳이어야지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한두사람만 있는, 그러니까 엄마아빠만 딱 있는(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는) 그런 곳이면 그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곳들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게 **개개인들이 다 그대로 살 수 있는**...결국 아이들 삶을 그대로 봐주려면 우리가 어른들로 그렇게 지낼 수 밖에 없어요...(중략)...효율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따로 만들려면 그래야 겠지만(하나의 기준을 갖고 움직여야 겠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별똥)

3) 아이 함께 키우기는 함께 살기: 물리적 한계를 넘는 관계의 마을 형성

참여자들이 공동육아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름자리를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를 관통하는 것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어떤 조합원은 "처음에는 (공동육아가) 애한테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합 활동에 엄마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조합의 크고 작은 일들에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엄마들 간의 교류 뿐 아니라 가족들 간의 교류가 일어난다. 특히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빠들에 비해 구름자리조합의 아빠들은 학교와 조합 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양육에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아이 양육은 결코 엄마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 나아가서 서로 다른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아이 양육을 함께 하는 조합원들은 물리적으로는 서로 지근거리지 살지 않고(서로 상의해서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행정동에 떨어져 살지만 같

이 살고 있다고 느낀다. 소모임을 같이하는 아빠들은 수시로 만나 저녁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기도 하도, 텃밭을 같이 가꾸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은 텃밭에서 만나 수확을 하고 고기도 구워먹는다. 가지를 수확을 한 조합원들이 조합 밴드에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면 다른 조합원들이 댓글을 단다. 그러면 그날 가지를 수확한 조합원들은 가지 한바구니를 들고 댓글을 단 조합원집에 '방문 배달'을 하기도 한다.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는 조합원들도 밴드에 수시로 올라오는 다른 조합원들의 물건 나눔(서로의 육아 용품을 물려 쓰고 돌려쓰는 것)에 답하면서 왕래한다. 딸기가 표현한 대로 구름자리 조합원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먹고, 나누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것과 같다. 조합원들은 비록 물리적 공간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구름자리조합이라는 육아의 공동체를 통해 자신들이 마을처럼 연결되어 있다. 일종의 '관계의 마을'을 형성한 셈이다. 구름자리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 생활패턴의 특성상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마을'을 형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연대와 협력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름자리공동육아 조합원들이 보여준 아이 함께 키우기는 결국 함께 살기이다.

<자료 17>

"이제 '내 아이'란 개념을 지나 버렸어.(내 아이 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섰어.) 와 보니까 이 곳은 애만 키우는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공동육아 조합은) 유치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애. 굳이 내가 (사회적 일에) 뜻이 없어도 이들(조합식구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도 어느새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u>같이 사는 것 같애요, 이 삶을</u>***…." (딸기)

공동육아는 그 시작과 유지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에게 '내 아이'를 넘어 '우리들의 아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공동체 즉 돌봄의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철저히 개별화된 지금의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모들의 육아 고립의 시대에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사회적 울림과 함께 양육/육아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에 대한 방법적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공동육아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지역 사회에의 기여를 도모하는 모습은 육아기관과 지역 간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는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구름자리 공동육아 조합원들의 삶을 통한 우리의 이해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양육을 실천하고 있는 공

동육아조합 등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지속가능하도록 돕고, 또 다른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양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 참고문헌

공동육아연구회(1994).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고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7).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육 실태 조사 보고. 서울: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동육아공동체교육 누리집(http://www.gongdong.or.kr).

김기영(2016).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공동육아의 실천사례-안산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비평, 37*, 208-229.

김미란(2008). 육아공동체에서 부모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가족에 의한 공동체의 형성과 경계들. *교육사회학연구, 18*(3), 19-60.

김미영(2012). 공동육아 방과후 모델개발연구보고서1. 서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김미영(2013). 공동육아 방과후 모델개발연구보고서2. 서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김현진(2014). 육아공동체 교사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류경희·김순옥(2001).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조합형 어린이집 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9*(3), 107-133.

이부미(1999). 공동육아 나들이 활동의 교육적 과정과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4*(2), 25-46.

이부미(2000).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유아교육연구, 4*(1), 131-150.

이부미(2007).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의 실천적 지식구성 과정에 대한 현장연구: 연못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 논집, 11*(2), 5-46.

이성규(2014). 협동조합 배경에 따른 공동육아협동조합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3), 367-393.

임나은(2014). 품앗이 육아공동체를 통한 호혜적 모성의 가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재택·심미연(2007).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연령통합 교육과정 운영 연구. 교사교육연구, 46(2), 1-20.

오하나·배정환(2013). 공동육아보육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한국비교정부학보, 17*(2), 193-220.

우민정·주봉관(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품앗이 육아공동체 참여과정에서 겪는 긍정적 경험과 어려움.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3), 147-168

전가일(2013). 자유놀이에서 유아의 관계맺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가일(2018). 그들은 왜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는가?: 한 공동육아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에 관한 의미 탐구. 한국교육인류학회 2월 월례발표회 자료집.
조윤경(2011).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돌봄의 의미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한혜정(2012). 다시, 마을이다-위험 사회에서 살아남기. 서울: 또 하나의 문화.
허라금(2006). 돌봄의 사회화,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서울: 또하나의 문화.
Gadamer(1960). *Wahrheit und methode.* 이길우 외 역(2000). 진리와 방법. 서울: 문학동네.
Gray, P.(2014). <The decline of play>. Ted 동영상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Bg-GEzM7iTk
Jansson, M. (2015). Children's perspectives on playground use as basis for children's participation in local play space management. *Local Environment, 20*(2), 165-179.
Koro-Ljungberg, M., MacLure, M. & Ulmer, J. (2018). D...a...t...a..., Data++, Data, and Some Problematics. Denzin, N. K. & Lincoln, Y. S. (Ed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SAGE Publications.
Kohn, E.(2013). *How Forests Think: Toward an Anthropology beyond the Human.* 차은정 역(2018). 숲은 생각한다. 서울: 사월의 책.
Larrick, P. S. (2017). My currere journey toward a critical rural pedagogy. *The Currere Exchange Journal, 1*(1), 67-77.
Richter, R. & Eriksen, J. (2003). Care through cash and public service. *European societies, 5*(4), 349-351.
Saldana, J. (2009).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Sellers, M. (2013). *Young Children Becoming Curriculum.* London & NY: Routledge.
Spradley, J.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2006). 참여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Stewart, A. (2015). Rhizocurrere: a Deleuzo-Guattarian approach to curriculum autobi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28*(10), 1169-1185.
Taguchi, H. L. (2010). *Going Beyond the Theory/Practice Divi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roducing an intra-active pedagogy. 신은미 외 (역)(2018). 들뢰즈와 내부작용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구분 넘어서기. 서울: 창지사.

van Manen, M. (2014). *Phenomenology of Practice*. CA: Left Coast Press.

Vincent, C., & Martin(2002). Class, culture and agency: Researching parental voice: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23*(1). 109-128.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국가와 부모의 역할

김 인 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9. 5. 10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국가와 부모의 역할

김 인 경

Korea's Leading Think Tank KDI

국가의 역할 , 부모의 역할?

KDI

- 모든 아동은 누구나 우수한 보육 ·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님.
  - 아동의 발달을 성인의 시각에서 성패를 결정짓기 보다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 욕구를 부모와 제도가 충족해주고 아동의 만족감이 중요
- 국가의 역할은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 교육적, 정서적 자극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 아동이 긍정적인 삶을 영위한다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나 미래의 우수한 인력 양성은 파생되는 결과
- 부모의 역할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행하면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 부모 역할 개선 기회에 개방적 ·성찰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보육 · 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경험에 관심을 가질 필요

-2-

국가의 역할(계속)

KDI

1) 기관의 구조적 · 과정적 질적 기준 설정

- 시설 면적,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 크기 , 보육 · 교육과정, 입소 우선순위, 교사 역량 등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특히,교사 양성에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격증 발급 시 영아와 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가치, 태도, 전문적 지식, 실무 역량, 부모와의 소통 역량 모두 충분히 교육

2) 기관의 질적 투명성 제고

- 기관의 질적 투명성이 낮다면 비영리기관도 학부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만이 위생적이라는 연구도 존재
- 회계 정보 공개는 물론, 이용 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공개, 학부모에게 일상적으로 교실 공개

-3-

국가의 역할(계속)

KDI

- 설문조사, 회계 정보를 토대로 더 우수한 기관이 인근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함.
- 기관간 경쟁이 미흡하고 질적 규제 수준이 낮을 때에는 질적 우수성에 있어 기관 유형이 중요하거나 기관 유형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혼재
- 정부가 질적 수준을 규정, 질적 투명성을 도모하면서 기관 간 경쟁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한다면 모든 기관의 질적 수준이 상향되는 경향
  - 네덜란드: 보육시설 인근에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정서적 지원, 언어적 모델링 역할, 발달 및 학습 도모 등의 측면에서 질이 상승
  - 스웨덴: 민간 고등학교에 공적 지원이 들어가면서 학교 간 경쟁이 강화-> 고숙련자 교사의 임금 상승,지자체 민간 학교 학생 비율 증가 시 학생 학업성취도 증진

-4-

국가의 역할(계속)

KDI

- <사례> 호주의 보육시설 체인 ABC Centre
  - 1988년 생겨난 후 2007년에 905개를 운영해 호주 종일제 시설의 약 1/3을 운영하다 아래 두 이유로 파산
    1) 기업의 운영성과를 부풀려 무리한 사업확장을 시도함.
    2) 다른 기관을 인수할 때 abc소유주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개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에 거래 수수료를 지불, 처남이 운영하는 보수회사에 보육시설의 수리를 맡김.
    -> 기관 단위에서의 부모가 회계와 질적 수준의 일치 여부를 추론할 수 있어야/ 소유주가 속한 회사, 친인척가거래 시 그 내역을 회계시스템상 남겨 타인과의 거래액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함.

ABC LEARNING CENTRES

-5-

국가의 역할(계속)

KDI

3) 부모가 질적 투명성을 해석할 수 있는 정보 및 기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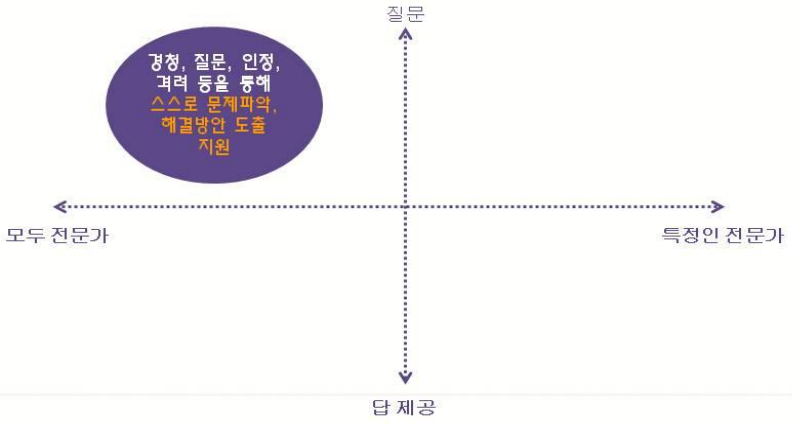
- 영유아 시기 발달의 특수성, 영유아기 보육 · 교육의 고유한 가치, 영유아 배움 욕구 지원에 적절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
- 기관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적절한 교사-아동 상호작용은 곧 적절한 부모-아동 상호작용과 연관, 기관의 보육 · 교육 환경 구성 역시 가정 내 환경 구성을 토대로 평가하게 됨.

-6-

국가의 역할(계속)

KDI

- 부모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그 중요성을 전달하고, 어느 시점에 제공해야 수용성이 높을 것인가?



-7-

국가의 역할

KDI

4)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아동에게 우수한 보육 · 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전계층 무상보육 유지는 비용 인상을 억제, 그러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 인상이 불가피
-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육교육의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동을 위한 일인가?
  - 캐나다 사례: 1990년 후반 퀘벡 주 $5 dollars a day라는 보편 보육을 시행 -> 이 때 기관을 이용한 아동의 인지 발달 저하, 건강 악화, 삶 만족도 저하, 범죄 가담 증가
- 고소득층이 절약한 교육비로 더 우수한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한다면 사회적 불평등 확대 가능

-8-

부모의 역할(계속)

KDI

1) 자녀에 대한 보호와 존중 :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

- 자녀교육 시 성인이 지닌 우위에서 자녀에게 불안감 조성은 지양
- 규율이 아닌 선호의 영역은 부모-자녀간 의견 조율
- 비교, 경쟁적 지도보다는 자녀만의 다름을 인정하고 강점을 격려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에 충실
- 아이의 발달 상황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소홀히 하지 않되, 아이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 아이에게 안정감 제공

2) 부모 역량 개발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활용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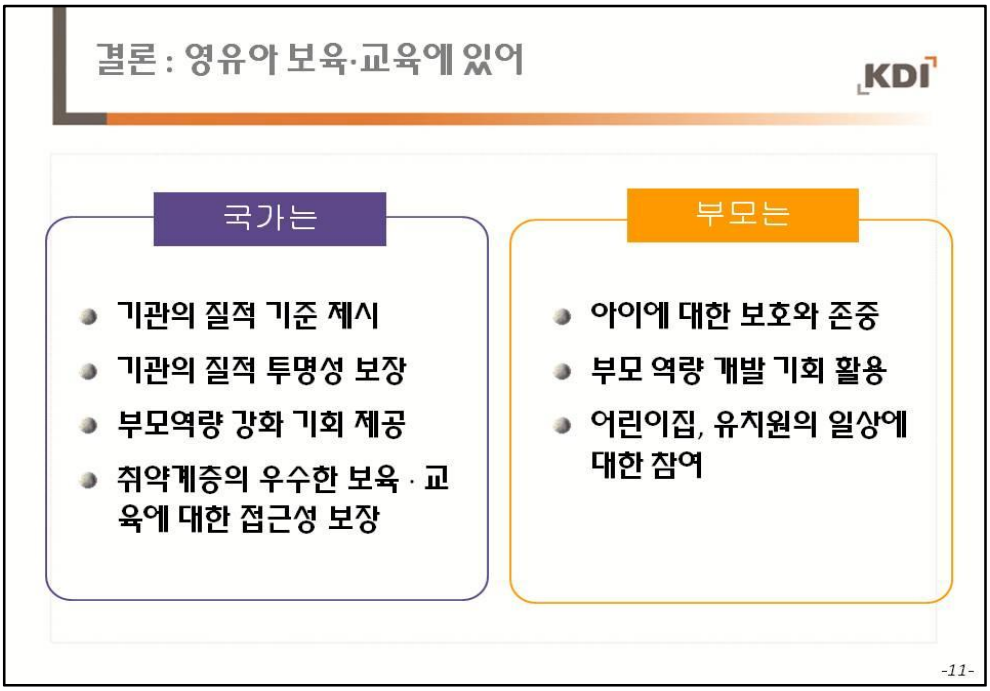
부모의 역할

KDI

3)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

- 기관의 운영 상황, 일상적 보육·교육 수준에 대한 관심과 의견 제시, 선생님과 소통 및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아동 양육에 있어 양자가 일관성을 유지
- 문제 발생 시 상황 공유해 오해와 불신이 쌓이기보다 함께 해결책 모색
- 기관운영에 대한 부모 참여는 부모간에 공동체 구성, 공동 육아로 이어짐.

-10-


결론 :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KDI
국가는
기관의 질적 기준 제시
기관의 질적 투명성 보장
부모역량 강화 기회 제공
취약계층의 우수한 보육 · 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
부모는
아이에 대한 보호와 존중
부모 역량 개발 기회 활용
어린이집, 유치원의 일상에 대한 참여
-11-


Korea's Leading Think Tank
감사합니다.
KDI



좌 장

강 현 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토론자

김 진 성 소장(생각실천연구소)

유 복 림 센터장(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 영 인 교수(한라대학교)

<토 론 문>

아동 양육 '국가책임'인가 vs '부모책임'인가

김진성 작가(생각실천연구소 소장)

국가가 생각하는 아동 양육의 목적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라고 보인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의 저출산 예산 130조 중 66%인 83조가 보육예산이다. 이것만 보아도 정부는 아동 양육을 단순 저출산 문제의 해결로 본다고 알 수 있다.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 양육의 목적은 사회적 성공 또는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것에 있다.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먹고 잘사는 것에 목적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관점이 다르다. 국가는 인구만 늘리면 되지만,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 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국가는 출산율이 올라가면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고 판단하겠지만, 부모는 출산율에 상관없이 아동 양육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국가와 부모의 관점이 다르므로 맞벌이를 하다가 전업으로 돌아선 아빠의 입장에서 국가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주장하고 싶다.

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결과에 따르면 4인 가구의 표준생계비는 초등학교 자녀 1명 기준 약 464만 원이고 2명 기준 579만 원이다.

실제로 삶의 질을 고려해서 최저로 잡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달 생활비는 약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실수령액 400만 원이 되려면 연봉 약 5800만 원이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연봉 6000만 원 이상은 전체 직장인의 13.4%에 불과하다. 따라서 4인 가족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인 기준 86.6%는 맞벌이를 해야만 한다.

이렇듯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부부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출산율이라고 판단한다면, 맞벌이 부부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에 대한 양질의 양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명이 양질의 직업 혹은 이해할만한 급여를 받으며 10시에서 4시까지의 근무가 가능한가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혹은 학교에서 일이 생겼을 때 자유로운 휴가가 가능한지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퇴사하거나, 조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거나, 도우미를 통한 양육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동 양육에 대한 관점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내용으로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 증가는 요원할 것이며,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인가? 부모는 국가에 비해서 아동 양육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산율이 저하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0대 중반의 부부다. 맞벌이를 위해서 자녀 출산을 늦추고 있다. 아내는 10명 이내의 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확률이 높아서다. 주변에서 출산에 대해 종용하고 있지만, 삶의 질을 포기하기도 싫고, 워낙 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니 무섭기도 해서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30대 중반의 또 다른 부부다. 외벌이이고 한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둘째를 절대 고민하고 있지 않다. 부부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서만 책임을 지고 싶어 한다.

40대 초반의 외벌이 부부다.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생활비 때문에 맞벌이를 고민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공교육으로 7~8시까지 양질의 보육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아이를 맡기고, 보육 도우미를 고용해야 해서 고민이 많다. 부모의 양육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 자존감, 인성인데 과연 사교육과 보육 도우미를 통해서 구축될지에 대한 고민도 크다.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첫째 딸은 살림 밑천이야'라는 말을 하거나, '아이는 알아서 큰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가 제공하는 양육정책 내에서 육아를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출산하지 않는 것도 인생에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있다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게 하거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공부하고 자녀를 관찰 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 양육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애착이다. 자녀가 안정 애착을 보이지 않으면, 무엇인 문제인지 관찰하고 공부해야 한다. 질 좋은 어린이집이나 비싼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아이의 현재 모습을 관찰하고 문제 되는 부분을 공부해서 수정해 나가야 한다.

아이의 성향, 인성,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관찰과 관찰에 따른 공부를 통해 양육을 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가 성향이 다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는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공부하여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고 행복감을 느끼면 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전 부모님 세대에서는 방치나 방임형 부모가 많았다면, 이제는 공부하고 관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책임이 아동 양육을 위한 관찰과 공부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정리를 해보자.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높은 물가로 인해 가정이 필수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이에 따른 양육정책을 만들어야 한

다. 청년 취업과 미혼의 결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게 되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고 국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동 양육의 부모책임은 자녀를 관찰하고 양육에 관한 공부를 해서 자녀가 바르게 사회에 적응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살게 하는 데 있다. 외벌이면 시간을 투자해서, 맞벌이면 양보다는 질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관찰을 통한 본인 자녀만의 방법을 찾고 모르는 부분은 공부해서 찾아 나가야 한다.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찰과 공부가 추가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양육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져야할 부분과 부모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다르다. 국가와 부모가 다른 부분을 잘 인식해서 양육을 해야 국가, 부모, 자녀의 행복도가 올라갈 것이다.

<토 론 문>

국가와 양육자의 조화로운 협력

유복림(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동양육을 전적으로 국가책임이다 혹은 부모책임이다 라고 양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사회 · 문화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어느 하나에 더 무게가 가기도 하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온전히 부모 혹은 가정의 책임이었던 아동양육이 무상보육 이후 제도적 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책임 없는 발언은 일부 부모들의 도덕적 해이까지도 초래하였다. 보육료를 국가가 다 부담해주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은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이후 영아(0~2세)는 부모가 키우도록 하는 정책 전환으로 양육수당이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면서 출생 인구의 감소까지 겹쳐 어린이집수는 다시 감소하였으니 이 얼마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인가?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과 시행은 UN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육에 관한 정책은 아동보다는 여성(가족)복지 혹은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다. 시간제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24시간어린이집 등은 육아휴직, 육아휴가 등 가족친화적 제도의 후위에서 대안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자꾸 시설로만 내몰 것이 아니라 육아의 즐거움과 가족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사회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시에는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 교육적, 정서적 자극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김인경 박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가일 박사는 공동육아의 현황을 내부에서 들여야 보며, 조합원들이 경험하는 공동육아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이것을 유지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풀어 공동육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공동육아는 자기 자신의 아이에만 집착하는 현대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어린이집에서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내 아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이 아이를 퇴소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동육아는 육아를 함께 하며 기관에 대한 믿음, 교사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기에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의문에 스스로 해답을 찾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불신으로 불안한 부모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곳이다.

공동육아의 부모들은 육아를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책무로 더 나아가 즐거움으로 체감하고 있다. 경의를 표할만 한 일이다. 그러나 평가인증이라는 국가적 제도 속에 수용되지 못하고, 인가조차도 받지 않는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평가제로 바뀌니 어떤 변화가 닥칠지도 모른다.

이것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제도권 속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고스란히 부모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시대에 부모부담은 여러 훌륭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운동의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구름자리 공동육아의 경우에만 해당되겠지만 흑자운영은 부모조합원들의 수익 사업과 교사조합원들의 임금동결이라는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안정적이지 못한 현 상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동육아의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표현한다면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이들도 집보다 나은 환경과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을 바꾸어 어린이집 종류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을 넣고 이후 협동어린이집으로 수정하였듯이 제도권 안에서 육아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자녀 양육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국가도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자조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통된 철학이나 가치에 의해서 모였다기보다 공간 제공이나 물질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올바른 양육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들에게 함께 돌봄의 가치를 심어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비로 운영되는 육아나눔터에는 양육 전문가가 없어 콘텐츠가 검증되지 않을뿐더러 바람직한 부모역할 확립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부모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 예산이므로 시군구의 재정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유무가 결정되는 등 그 편차가 크다. 유사한 사업의 부처 간 조정도 필요하며, 육아종에 국비가 지원되어 사업의 표준화도 시급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도 단순히 돌봄과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여야 양육의 사회 안

전망이 구축될 것이다.

공동육아에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분명 현저히 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현재의 직장문화가 당연시 되어야 할 참여를 부담으로 느끼게끔 하고 있다. 사회의 인식 전환과 강제되는 제도, 예를 들면 모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같은 것이 필요하다. 기업 수준이 아니라 국가수준에서 말이다.

김인경박사는 국가의 역할 중 기관의 질적 투명성 제고를 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열린어린이집'을 표방하며 매년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열린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운영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 많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교실의 일상적 공개는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 한 축에는 부모들이 교실로 들어와서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귀찮아하는 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진정한 열린어린이집은 부모의 행사 참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열려 있어서 수시로 부모가 드나들 수 있는 - 비록 어린이집에서의 에티켓을 교육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의 모습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행태도 어린이집이 늘 개방되어 있다면 빈도가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부모모니터링 제도, 열린어린이집 운영 방식은 부모가 질적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질적 수준을 규정할 때에는 부모나 원장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교사 대 아동 비율 하나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관 간 경쟁은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입맛에 맞는 운영, 예를 들어 과도한 특별활동, 낮잠시간 미배정 등과 같이 우려할 말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평가인증이 평가제로 전환되지만 변별력이 없다면 이 또한 부모들이 기관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부모교육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온갖 부처에서 그 필요성에 합의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클로버부모교육에 참여하고 4살까지는 가정양육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부모의 말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부모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오지 않

는다. 온라인강의도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부모역할에도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부모됨의 의미를 알 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모인증제도나 양육수당과 연계하여 부모역할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사회 전반에서 양육을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간주하는 문화일 것이다. 사회가 함께 어린이의 이미지를 연구하고 어린이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존중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3/4을 넘는다. 부모들은 존중과 훈육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부모교육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저출산과 맞물려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합동계획을 수립하여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점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의 책임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서비스들이 신청에만 기반한다면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홍보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나 역부족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토 론 문>

아동양육에서의 국가의 몫, 부모의 몫

장영인(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권리의 보장이 국가책임인지 부모책임인지 논의 주제가 되는 이유는 그 책임성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국가도 담당해야 할 각자의 몫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특정권리를 보장할 몫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가 구체적으로 따지다보면, 책임의 경계나 그 내용 등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 사회, 국가는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을까? 최근의 상황은 갈수록 국가의 몫이 강조되는 것 같다. 국가는 보육이나 교육 등에서 '국가책임제 확립'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이 국가가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고,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국가가 보다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낳기만 하면 국가가 부모처럼 알아서 키우겠다" 등의 정치적 레토릭 속에서 부모의 몫은 파묻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사회적 양육은 부모들이 '함께 키우기'임을 구체적 현장에서 보여주는 전가일박사님의 발표나 영유아보육과 교육에서 국가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준 김인경박사님의 발표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이들 발표들을 전제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몇가지 논의거리를 던지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국가책임 또는 부모책임 논의의 전제－책임 주체(성인)의 관점이 아닌 아동관점

아동권리는 18세 미만의 발달단계에 있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포괄적인 고유의 인권으로서, 사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들 권리의 보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로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포괄적인

아동의 인권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세부적 권리들로 구성될 것이다.

사회가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본 학회의 주제인 '아동권리보장에서의 국가와 부모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는 국가 또는 부모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는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단순한 책임구분에서부터, 그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부모의 각각의 몫은 무엇이며, 각각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 많은 논의점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아동권리의 영역이 다양한 만큼 그 논점도 더욱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 주제에서 제시되었듯이 아동권리보장의 책임 주체로서 한 축에 서있는 '부모'에 초점을 맞추면, 논점이 되는 권리와 책임은 발제자들이 다루고 있듯이 '아동양육'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즉 아동양육에 관한 국가 또는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며, 또 양육책임을 둘러싸고 양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육책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주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다 보면, 자칫 아동을 배제하고 성인중심의 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레토릭에 정작 아동은 없다.

국가이든 부모이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이유는 성인의 의무를 고려하기 이전에, 모든 아동이 '양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특성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그 사회의 모든 아동이 일정수준의 '양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개별가정의 책임영역인 아동양육에 국가가 개입할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성인간의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의 관점에서 국가와 부모 간의 책임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양육은 부모책임, 사회적 양육은 국가책임인가?

아동양육은 개별가정의 사적 영역의 일로서, 부모는 자신의 양육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과거에 양육은 전적으로 가정사에 속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에 의한 '사회적 양육'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형태가 '보육'이다. 양육이 가정 밖으로 나오면서 이는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공적 관심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국가책임 논의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진전되어 왔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논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적 양육의 보편화와 이에 대한 국가개입(보육정책 등)이 발전하면서, 자칫 양육책임이 부모로부터 국가로 이전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 개별 가정 부담의 양육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보육을 제공하는 인력이나 기관에 대한 질관리를 강화하고, 언제라도 원하는 사람은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공급을 보장하는 등, 국가가 공급과 비용과 그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역할은 '맡기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는 '보육은 국가책임'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양육에 관한 국가책임의 정도를 더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양육의 책임을 둘러싼 양자구도의 상황은, 가정양육은 부모책임 하에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양육은 국가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분절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사회적 양육의 확대 및 발전은 부모책임의 약화 내지 축소를 의미하는가? 또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의 양육책임은 면제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책임의 분절이 아닌 국가와 부모 사이의 협력과 관계의 질서를 알려준다. 아동권리협약은 '부모(또는 법정후견인)은 아동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또는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양육에 대하여 부모는 일차적 책임을 지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3. 국가의 아동, 부모의 아동—국가와 부모의 관계

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된 아동(the child)은 국가와 부모에게 있어서 '아동'이라는 동일한 존재이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국가에게 있어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아동은 공통의 보편적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구체적 개별성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통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 및 제도를 만드는 행위로 표현된다.

반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아동은 구체적 특성을 가진 개별화된 존재이다.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응하고 지원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즉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직접적인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양육은 부모와 국가 책임이 만나는 접합점이 되는 것으로서, 부모의 책임이 국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와 부모가 협력적 관계에서 양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미나, 이진숙

김근혜

권미나, 이진숙

김윤나, 이희연

김희진, 정혜영

박보은, 정선영

서보순, 정혜영

손유진, 서보순

안혜림, 강승지, 이연선

정혜영, 강승지 이연선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모 애착과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의 매개효과

권미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졸업)
이진숙(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 분노표현 방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모 애착이 분노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모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모 애착과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5,6학년 아동 282명이다.연구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1991)의 부모·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IPPA-R)를 번안한 척도(옥정, 1998), 권미나(2018)가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용 기본심리욕구 척도', 홍상황, 곽경숙, 김미라(2009)가 수정한 분노표현척도(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를 사용하였다.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은 분노표출, 분노억압, 분노조절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과 분노표현방식과의 기능적인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위해 분노표출, 분노억압을 합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으로, 분노조절을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과 AMO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간의 모형분석 및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결과 모 애착은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정적상관, 기본심리욕구 좌절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종속변수인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는 부적상관, 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 부적상관, 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 정적상관, 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 애착은 기본심리욕구 좌절과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종속변수인 분노표현 방식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역기능적·기능적 분노표현방식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 애착은 종속변수인 분노표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은 모 애착과 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심리욕구 좌절만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욕구가 좌절되지 않고 만족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key word : 아동, 모 애착, 기본심리욕구 만족, 기본심리욕구 좌절, 분노표현방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김근혜(한국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Ⅰ. 연구목적

과거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에서 새로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현 시점에서 유아교사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문제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Ⅲ. 연구결과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특징에 대한 인식

전체 평균은 3.75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특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 배경변인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유아교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은 보직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보직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직교사(M=3.98, SD=.68)가 일반교사(M=3.72, SD=.85)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t=2.06$, $p<.05$). 즉 보직을 맡은 교사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역량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에 대한 인식

전체 평균은 3.94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 배경변인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유아교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은 보직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보직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직교사(M=3.80, SD=.83)가 일반교사(*M*=3.53, *SD*=.83)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t=2.10, *p*<.05).

key word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 아동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김민서(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석사)
이진숙(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아동의 공감능력, 또래관계 질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아동 공감능력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지역 소재 초등학교 5곳의 4 ~ 6학년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 자료는 307부이다. 아동의 또래관계 질의 척도(김명진, 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 척도(박서정, 2004), 아동의 공감능력의 척도(박성희, 1994)로 구성된 질문지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 및 Sobel Test(1982)를 실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 부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공감능력,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또래관계 질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또래관계 질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공감능력은 정적상관을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공감능력은 부적상관을 나타났다.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아동의 공감능력을 통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도 공감능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아동의 공감능력을 통해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공감능력은 또래관계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있어 공감능력이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하며,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정서표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부모코칭 및 부모교육 등의 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촉진시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정서표현, 공감능력, 또래관계 질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실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부교수)
이희연(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 부교수)

본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쉼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사례관리 실천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맥락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얻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사례관리 실천경험은 무엇인가?”이며 사례관리 경험이 9개월 이상인 경기도지역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를 추천받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 까지 9명을 심층면접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자료화하였으며 전사한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각 참여자별로 반복하여 읽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단어 및 구문을 분석단위로 코딩을 한 후,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구문과 문장을 엮는 작업을 진행하는 범주화 분석과정을 거쳐, 연구주제에 따른 실제적 의미를 추출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확보와 윤리적 고려를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기 전 서면동의서를 받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어도 심층면접과정에서 참여자가 원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이해를 구하였고 녹음 되었어도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요구할 것을 안내하였다. 심층면접 진행시 참여자의 생각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다 정확한 질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해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표현 등은 재질문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술의 명확성을 확보하였다.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실천경험을 분석한 결과, 총 42개의 하위범주와 17개의 범주 및 6개의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영역과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례관리 개념이해: 이론적 이해, 체험적 이해’, ‘사례관리 실무습득: 이론학습 및 매뉴얼 숙지’, ‘사례관리 실천과정: 관계형성, 사정, 개입/서비스제공, 종결 및 평가, 사후관리’, ‘사례관리 성공요인: 동기부여와 주도성, 클라이언

트 중심의 개임', '사례관리 실패요인: 표면적 욕구와 서비스 중심의 개입, 쉴 수 없는 쉼터; 기관기능(단기)의 본질적 한계','사례관리 어려움과 소진요인: 성과지표와 현실의 괴리로 성취감 저하, 행정업무과다, 사례관리자 지지체계 부족'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제언으로는 첫째, 청소년쉼터에서의 사례관리에 관한 의미와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어려움의 극복과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 수퍼비전 및 보수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사례관리 대상의 선별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선별성을 완화하고 보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가출청소년 사례관리에 관한 질적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고 쉼터 평가의 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와 복지 문제가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key word : 단기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사례관리, 질적연구, 내용분석

교육생태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아수학교육

김희진(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플러스 연구원)
정혜영(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Ⅰ. 머릿말

생태학의 관점을 교육에 적용하여 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태학적 환경과 다양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현상을 풍부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남상준, 2009). 이는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학습자의 삶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이대현, 2011). 수학은 물리적 세계와 동떨어진 확고하고 추상적인 영역의 학문으로 여겨져 왔으나 수학적 지식 또한 물질적인 것과 불가분하므로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인 것이다(노정원, 2017). 따라서 유아수학교육의 목표는 수학적 지식을 단순히 획득하는 것이 아니며, 내용뿐 아니라 의사소통하고 표상하기와 같은 수학적 과정까지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정혜영, 2015). 본 연구는 교육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삶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 유아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정리·분석하고 관련성을 파악하여 연구자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문헌연구의 과정을 거쳤다.

Ⅱ. 교육생태계와 유아수학교육

첫째,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수학교육을 통해 유아가 자신과 환경에 궁금증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 문제를 풀기 위해 스스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들을 습득하게 된다(김남희, 서보순, 손유진, 2017). 유아들의 일상적 삶 속에 얽혀 성장에 관여하는 어떤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삶에 내재되어 있어서 놀이로 표현되고 흥미로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과의 고리를 찾아내고, 그 고리를 연결시켜 의미를 부여해가는 과정은 교과 수업과 차별되는 놀이를 통한 배움(김희연, 2017)이 되는 것이다.

둘째, 들뢰즈에 따르면 인간에게 배움이란 무차별적으로 개인-주체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기호(sign)와의 끊임없는 '마주침(encountering)'에서 발생하는데, 교과서가 이미 기표 안에 의미를 부호화해놓은 고정된 기호와의 마주침이 아니라,

기표-기의의 고정된 관계를 벗어나는 탈주(flight of line)를 통해서만 진정한 배움이 발생한다고 본다(임부연, 박수연, 2017). 배움은 단순히 아동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이 아니며, 탐구의 순간과 사건에서 생성되는 질문과 문제를 둘러싸고 특정 장소와 공간에서 인간 주체, 신체,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미 만들기의 협력적 과정인 것이다(Taguchi, 2018). 인간은 익숙한 사유습관을 가지고 있어 재현에 익숙하지만 낯선 기호와의 마주침을 통해 익숙한 것에 대한 인식의 균열이 생기고 이를 탈주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움 배움이 생성된다.

Ⅲ. 맺음말

본 연구는 생태계적 관점이 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중심으로 유아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확고한 지식으로 구조화된 분절된 교과가 아닌 삶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획일적인 교육방법으로 수학적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전체 대 개인의 차이가 아닌 개인의 차이생성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호의 모호함을 마주하고 이전에 가졌던 재현적인 인식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배움의 생성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사와 학습자라는 주체를 고정시키지 않고 함께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동구성 과정을 통해 수학적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ey word : 교육생태계, 유아수학교육, 배움, 기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기보호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보은(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정선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기보호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저소득가구 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집단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중 무작위로 표집된 13개 센터의 아동을 설문조사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비이용집단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초등학교 1학년 5차년도(2014)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학교적응은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척도(민병수, 1991)로 측정하였으며 자기보호는 크게 일주일 중 자기보호일과 1일 평균 자기보호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t검증,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여부에 따라 자기보호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집단은 비이용집단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동의 자기보호시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단순히 아동의 자기보호시간 감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은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지역아동센터의 보호기능을 통해서라기보다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key word : 학교적응, 자기보호, 지역아동센터, 저소득가구 아동, 빈곤 아동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놀이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

서보순(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정혜영(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본 연구는 최근 10년(2008년~2017년) 동안 유아놀이를 주제로 발표된 국내연구물과 국외연구물의 키워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내연구물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493편을, 국외연구물은 SSCI와 SCOPUS 등재 학술지 논문 350편의 키워드를 UCINET 6.0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분석하고, NetDraw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놀이 국내연구물에는 '놀이성', '또래 상호작용', '사회성', '극화놀이', '창의성' 등이, 국외연구물에는 '발달', '발달지체유아', '가족', '언어', '사회성'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놀이 국외연구물 키워드의 네트워크는 국내연구물 네트워크와 유사한 속성을 지녔지만 상대적으로 연결이 조밀하고 서브그룹을 많이 내포한 형태였다. 셋째,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결과 국내연구물에서는 '놀이성', '또래 상호작용', '극화놀이', '창의성', '사회성', '바깥놀이', '프로그램'이, 국외연구물에서는 '발달지체유아', '발달', '가족', '다문화', '또래 상호작용', '놀이환경', '사회성'이 핵심적인 키워드였다. 넷째, '사회성' 에고 네트워크는 국내연구에서 '극화놀이', '놀이성', '언어'와, 국외연구에서 '발달지체유아', '발달', '상징놀이'와 관련지어 연구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또래 상호작용' 에고 네트워크는 국내연구에서 '양육태도', '자기조절', '가족'과, 국외연구에서 '발달지체유아', '극화놀이'와 강하게 연관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놀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를 탐색하고 국내연구와 국외연구의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추후 연구 및 놀이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ey word : 유아놀이 연구,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저출산 현상에 관한 언론보도의 토픽 모델링 분석

손유진(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보순(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2001년에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 저출산의 진행은 인구규모 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성장 동력 및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경제성장의 둔화, 생산연령층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 세대 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등 광범위한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점화시켰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야 할 국가적 위기로 규정짓고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한 접근은 개별 요인에 대한 단선적 대응을 유도했으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들이 장기간 진행되어 왔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불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은 복잡성,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사회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생성되는 수많은 쟁점들과 그에 따라 거론되는 대상이나 개념, 언어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 관련 언론보도의 주제적 특징을 도출하여 우리 사회의 쟁점과 정책, 담론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초점이 되는 대상이나 개념의 특성 및 구조를 분석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15년간(2005년 1월 ~ 2019년 3월) 보도된 저출산 관련 뉴스를 LAD(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해 저출산 현상의 토픽을 추출하고, 주요 쟁점을 5년 주기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관련 기사에는 ‘위기’, ‘여성’, ‘고령사회’, ‘정부’, ‘양육’, ‘사교육비’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으며, 최근 5년간 기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둘째,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저출산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였으며, ‘국가위기’, ‘비용지원’, ‘삶의 패러다임 변화’ 등의 토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시기별로 구성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언론보도기사에서 주목되는 주제를 도출하고 시기별로 비교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사회의 저출산 쟁점을 확인하고 그 변화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후 연구에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key word : 저출산 현상, 언론보도, 빅데이터, 토픽 모델링 분석

보육교사로 살아내기에서 살아가기로 : 23년 경력의 한 보육교사의 이야기

안혜림(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BK21 플러스 연구원)
강승지(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BK21 플러스 연구원)
이연선(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보육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육교사로서의 지속적 경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육교사로서의 지속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육교사로서의 10년 경력을 고경력으로 간주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23년을 보육교사로 살아내었고,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육교사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사람들에게 울림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지역사회, 한국, 결국 우리가 모두 엮인 세계의 삶을 23년 경력의 보육교사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생성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로 23년 차 한 보육교사의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3년의 보육교사 경력을 가진 보라(가명) 선생님이다. 현장텍스트는 4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작성되었다. 연구자들은 현장텍스트을 읽고, 또 읽으며 참여자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잠정적 연구텍스트 작성을 거쳐 최종 연구텍스트가 완성되었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로 살아온 23년간의 삶은 ‘살아내기’에서 ‘살아가기’로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는 23년의 경력이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닌 “실존적 사태”임을 드러낸다. 본 고에서는 한 보육교사의 23년간의 삶을 ‘살아내기’에서 ‘살아가기’의 과정으로 보고 ‘어쩌다보니 유아교사’, ‘‘나’가 없는 살아내기’, ‘‘나’로 살아가기 위한 흔적깨기’로 주제화하였다. 그녀의 삶은 ‘살아내기’와 ‘살아가기’가 얽혀있는 삶이었다. 그것은 개별적인 한 보육교사의 삶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과 중첩된 삶이며, 한국 ‘보육’의 흐름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처음 한국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이래 ‘보육’은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 안에 보라 선생님의 삶도 함께 얽혀있었다. 보라 선생님 역시 ‘보육’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처럼 보육교사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은 ‘살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또한, 그녀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많은 이름 속에서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었던 삶이

며, 보육교사로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이며, 자기 삶의 주체이자 자신이 속한 교실현장에서 교사 주체로 살아가는 삶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23년 경력의 한 보육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보육교사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많은 보육교사에게 '보육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key word : 보육교사, 경력, 주체, 살아내기, 살아가기, 내러티브 탐구

저출산 연구동향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정혜영(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연선(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강승지(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로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포함한 다양한 방향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 그 자체가 역동적인 시스템이며, 사태의 복잡성에 주목하여 저출산 문제를 맥락적이며, 생동감 있는 자기 충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1,117건의 연구물을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복잡하게 얽혀가는 사회 속에서 인구변화와 저출산을 우리 삶과의 관계로 파헤치고 영유아교육에 어떻게 정책적 적용을 시사할 지에 대한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2차의 미흡하고 현실적 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제외된 것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대응하는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천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맞춤형 보육'을 확립하고, 자녀 돌봄의 여건을 확충,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문제 개혁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아동 놀 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놀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 혹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주체로 '아동'이 선정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정책 개발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 :저출산, 저출산정책, 연구동향, 언어네트워크분석

이 수 증

성명 :

소속 :

위 사람은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 주최하는
2019년 춘계학술대회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내용 : 아동양육, '국가책임'인가 vs '부모책임'인가
- 일시 : 2019년 05월 10일 13:00~17:30

2019년 05월 10일

한 국 아 동 권 리 학 회 장

2019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양육, ‘국가책임’인가 vs ‘부모책임’인가

발행일 : 2019년 05월 10일
발행처 : 한국아동권리학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구은미교수 연구실
Tel: 010-7490-1580 Fax: 070-7372-4233
E-mail: kccr1@hanmail.net
Homepage: www.kccr.or.kr